

研 究 報 告 書

第63輯(2011. 3)

회계 및 각 세법상 수입(수익)의 범위, 인식 시기 및 인식방법의 조화·개선에 관한 연구

韓國稅務士會 附設

韓 國 租 稅 研 究 所

◆ 研究責任者 ◆

전 병 욱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共同研究者 ◆

최 보 람 (호서대학교 교수)

목 차

제1장 연구의 배경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2절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2
제3절 연구의 효과	5

제2장 현행제도의 분석

6

제1절 기업회계-국제회계기준	7
1. 수익의 범위	7
2. 수익의 인식과 측정	8
가. 재화의 판매	9
나. 용역의 제공	10
다.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	13
라. 수익의 측정	14
3. 수익과 비용의 인식과 측정-각론	15
가. 재화의 판매에 관한 사례	16
나. 용역의 제공에 관한 사례	19
다.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	25
라. 인식과 측정의 문제	26
제2절 기업회계-일반기업회계기준	27
1. 수익의 범위	27
2. 수익의 인식과 측정	28
가. 재화의 판매	29
나. 용역의 제공	30

다.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	31
제3절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에 대한 공개초안	31
1. 미국회계기준에서의 수익의 인식	31
2.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	32
가. 핵심원칙	34
나.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	34
다. 계약에 포함된 각각의 이행의무를 식별	35
라. 거래금액을 결정	35
마. 각각의 이행의무에 거래가격을 배분	36
바. 기업이 각 이행의무를 충족할 때 수익을 인식	36
제4절 법인세법	37
1. 익금의 범위	37
2.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39
가.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40
나.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42
다.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43
라. 임대료 등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44
제5절 소득세법	45
1. 과세대상	45
2. 수익인식시기	47
제6절 부가가치세법	49
1. 과세대상	49
2. 거래시기	52
제7절 교육세법-금융업자를 중심으로	55
제8절 외국사례의 분석	58
1. 미 국	58

가. IFRS와 US-GAAP 간의 수익인식의 차이점	58
나. 연방소득세법상 익금	63
2. 일 본	63
가. 일본 법인세법상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	63
나. 수익과 비용의 귀속연도	64
제3장 제도 간의 비교 및 분석	68
제1절 회계기준 간의 비교 및 분석	68
1. K-GAAP과 K-IFRS의 수익 인식의 비교	68
가. 적용배제 항목의 추가	68
나. 거래의 주목적을 식별하기 위한 기준	68
다. 수익인식 조건인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에 대한 판단기준	69
라. 용역제공거래 전체에서 손실이 나는 경우의 회계처리	69
마. 주요 수익항목에 대한 공시	69
바. 지분증권 취득 전 순이익에서 결의된 배당금의 회계처리	69
2. K-IFRS 및 IFRS for SME와 ED의 비교 및 분석	70
가. 재화와 용역 이전으로부터의 수익인식	70
나. 각각의 이행의무의 식별	70
다. 라이선싱과 사용권	73
라. 신용위험의 효과	73
마. 추정의 사용	74
바. 원가의 계상	74
사. 그 밖의 수익에 미치는 영향	74
아. 공시	75
제2절 회계기준과 세법 간의 비교 및 분석-법인세법상 세무조정을중심으로	76
1. 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비교-수익의 범위	76

가. 회계상 이익과 과세소득의 개념상 차이	76
나. 익금항목에 대한 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구체적인 차이점	77
다. 회계기준과 소득세법의 비교	81
라. 법인세법과 각사업연도소득과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금액의 비교	85
2. 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비교-수익의 귀속시기	86
가. 권리의무확정주의	86
나. 구체적인 손익의 귀속시기	87
3. 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비교-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90
4.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의 개정	92
가. 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회계기준으로 포함	93
나.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손익의 인식방법 개정	93
다. 건설계약의 수익인식방법 개정	94
라. 중소기업 장기할부거래의 회수기준 신고조정 허용	94
마. 건설계약의 수익인식방법 개정	95
제3절 회계기준과 세법 간의 시가 개념의 비교 및 분석	95
1. 회계상 시가의 개념	96
2. 법인세법상 시가의 개념	96
가. 시가의 의의	96
나. 시가가 분명한 경우	97
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98
3. 소득세법상 시가의 개념	101
4. 부가가치세법상 시가의 개념	102
5.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의 개념	103
가. 시가의 의의	103
나. 시가의 범위	104

제4절 회계기준과 세법 간의 비교 및 분석-건설계약을 대상으로	107
1. 건설계약의 회계처리 방법	108
가. 국제회계기준 제1011호 건설계약	108
나.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119
다. K-GAAP과 K-IFRS의 비교	124
2. 건설계약 회계처리의 문제점	127
가. 자체분양공사의 수익인식 방법	128
나. PF공사의 수익인식 방법	132
다. 지분제 재개발·재건축 공사의 수익인식 방법	137
3. 건설계약과 관련한 세무상 쟁점	140
가. 적용범위 및 손익귀속시기의 결정	140
나. 진행기준의 적용	140
다. 작업진행률을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	142
라. 총공사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143
마. 주거용 부동산의 완성전 판매	144
제5절 회계기준과 세법 간의 비교 및 분석-전자상거래를 대상으로	145
1. 상품의 종류에 따른 수익인식의 문제	146
2. 운영방식에 따른 수익인식의 문제	147
3. 거래형태에 따른 수익인식의 문제	148
제4장 요약 및 결론	150
☐ 참고문헌 ☐	152

표 목 차

〈표 1-1〉 일반적인 수익인식	60
〈표 1-2〉 일반적인 서비스의 판매	61
〈표 1-3〉 서비스의 판매-환불.....	62
〈표 1-4〉 건설계약	62
〈표 2-1〉 재화와 용역 이전으로부터의 수익인식.....	71
〈표 2-2〉 각각의 이행의무의 식별.....	72
〈표 2-3〉 라이선싱과 사용권.....	73
〈표 2-4〉 신용위험의 효과.....	73
〈표 2-5〉 원가의 계상	74
〈표 2-6〉 공 시.....	75
〈표 2-7〉 회계상 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76
〈표 2-8〉 자기주식 관련 회계기준과 세법의 차이	77
〈표 2-9〉 평가차익 관련 익금	78
〈표 2-10〉 유가증권의 세무상 평가방법	79
〈표 2-11〉 손금에 산입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79
〈표 2-12〉 자산수증이익 · 채무면제이익의 처리방법	82
〈표 2-13〉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의 세법상 처리	83
〈표 2-14〉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간주임대료 비교	83
〈표 2-15〉 손해배상금의 개별세법별 처리방법	84
〈표 2-16〉 주주입장에서 투자한 법인으로 부터 받는 배당금의 처리방법	84
〈표 2-17〉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과세소득의 범위 및 과세방법의 비교	85

〈표 2-18〉 출자자에 대한 이익분배절차의 차이	86
〈표 2-19〉 손익의 귀속시기	87
〈표 2-20〉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	88
〈표 2-21〉 임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89
〈표 2-22〉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90
〈표 2-23〉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의 개정	92
〈표 2-24〉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방법	94
〈표 2-25〉 계약수익과 비용의 인식	116
〈표 2-26〉 약정의 조건에 따른 수익인식 방법	125
〈표 2-27〉 건설계약의 수익인식기준	126
〈표 2-28〉 누적발생원가에서 제외되는 원가	126
〈표 2-29〉 SPE 여부의 판단지표	136
〈표 2-30〉 건설계약 관련 회계처리의 문제점 요약	139
〈표 2-31〉 건설계약의 수익·비용의 인식방법 비교	145

제1장 연구의 배경

제1절 연구의 필요성

기업회계는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발생주의를 채택하는 반면 법인세법은 회계담당자의 주관이 개입될 위험이 많은 발생주의 대신 법률적 측면을 강조하여 권리와 의무의 확정시점을 귀속시기로 정하는 권리 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 밖에 교육세법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를 법인세법을 준용해서 규정하는 반면,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를 따르지만 일부 내용(장기건설공사의 작업진행률 계산방법 등)에서 법인세법과 차이가 있고, 부가가치세법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중점을 두고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법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 등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거래가 발생함에도 기업회계와 세법이 현실에 적시성 있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업회계와 세법 간의 수익인식시기의 차이와 함께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이하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K-IFRS”)이 상장기업에 전면 시행됨에 따라 기업회계 내에서도 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IFR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ities, 이하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IFRS-SME”) 간에 수익인식시기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원칙중심의(principle-based) 국제회계기준은 개별 거래와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회계기준을 세분화함으로써 수익인식시기에 관한 기업회계 내의 불일치와 함께 세법과 기업회계 간의 불일치가 점차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수익인식시기 외에 수익의 범위와 인식방법에 관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기업회계와 각 세법간의 괴리는 납세자의 납세준응비용(tax compliance cost)을 증가시켜서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ies)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양자를 조화시킬 수 있는 개별 세법과 기업회계의 개선방안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이 수익의 범위, 수익의 인식시기 및 수익의 인식방법과 관련한 기업회계 내의 불일치와 세법과 기업회계 간의 불일치가 점차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당한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이 발생하고 개별 경제주체들이 부담하는 일상적인 거래비용(transaction cost)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수익의 범위, 수익의 인식시기 및 수익의 인식방법과 관련하여 기업회계와 각 세법을 조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개별 경제주체, 특히 기장 및 세무조정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들이 편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공공재(public goods) 성격의 회계-세무보고 시스템의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절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한 국내의 선행연구는 범위를 다소 넓게 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제한적이다. 수익의 인식방법에 관한 연구는 특정 주제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대표적으로 전자상거래에 관한 연구가 2000년대 초반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따라 다수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최정호와 임창우(2001), 노세진(2002) 및 유영중과 이용환(2004)이 전자상거래상 매출의 인식문제에 대하여 분석한 후 대안을 제

시하였다.

다음으로 교육세법상 수익인식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한 것으로 이만우 등(2006)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의 귀속시기는 과세기간이 1년인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데 비해 교육세의 과세기간은 분기별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 등 신고·납부 관련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를 근거로 중간예납을 하고 법인세 확정신고시 법인세 세무조정과 함께 교육세 세무조정을 하여 확정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밖에 수익에 대한 전반적 분석으로 최상영(1998)은 수익과 비용의 인식 차이에 대하여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상 목적의 차이를 정확하게 인식하여 지속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수익의 인식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것은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회계와 연계한 포괄적 분석의 필요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수익의 개념과 관련하여 분석하는 개별세법인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및 교육세법은 해당 납세의무자의 소득(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이나 수익(부가가치세법 및 교육세법)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대상 소득과 수익은 관련 비용을 차감하는지에 따른 순소득과 총소득의 개념상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결국 적절한 과세대상 소득의 개념을 규정할 경우에는 개별세법상의 과세대상 소득이나 수익의 정의가 동(同)개념과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소득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해서 과세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리적 기초는 각 납세자가 자신의 경제적 능력에 비례하는 조세부담을 지도록 만든다는 능력원칙(ability-to-pay principle)이다. 그러나, 개별 납세의무자의 경제적 능력을 직접 측정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소득을 대용변수(proxy variable)로 해서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4 제1장 연구의 배경

개별 납세의무자의 경제적 능력을 대표하는 대용변수로 소득을 정의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득 외에 비록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능력의 증가를 의미하는 미실현자본이득(unrealized capital gains)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Haig와 Simons는 이러한 점에 착안해서 아래와 같이 소득을 정의했는데, 논리적으로는 이와 같은 소득의 정의를 바탕으로 한 소득과세(또는 이를 확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수익과세)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begin{aligned}\text{소득} &= \text{두 시점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능력 순증가의 화폐가치} \\ &= \text{소비} + \text{순가치(net worth)의 변화}\end{aligned}$$

이와 같은 소득의 정의는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 즉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은 모두 소득으로 보고 그것의 실현(realization)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현실의 개별세법에서 과세대상으로 하는 소득(또는 수익)에 비해 그 범위가 훨씬 넓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포괄적으로 정의된 소득에 기초해서 과세대상을 규정할 수 있다면 과세제도를 개선시킬 수 있고, 특히 능력원칙을 더욱 충실하게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현실의 과세제도에서 개별 납세자의 부담이 경제적 능력과 차이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과세제도는 개별세법의 여러 가지 허점들(loopholes)로 인해 과세대상이 계속 잠식되는 조세정책상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Haig-Simons의 소득 개념은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본질적으로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상 취급을 다르게 함으로써 나타나는 교란을 방지함으로써 조세제도의 중립성(neutrality)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것이다.

물론, Haig-Simons의 소득 개념은 ① 가격이 계속 변동하는 상황에서 각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의 순증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②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는 이중과세(double taxation)의 위험이 있고, ③ 물적자본에 대해서만 과세할 뿐 인적자본(human capital)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으며, ④ 가사서비스나 여가의 가치 등과 같이 거의 불가능한 것까지 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 등과 같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동(同)소득개념을 현실의 과세제도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적 소득측정에 대한 이러한 현실적 제약을 바탕으로 기업회계(국제회계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와 개별세법(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및 교육세법) 간의 비교문헌연구를 통해 이들 간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조화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한다.

제3절 연구의 효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복잡한 제도와 규제를 간소화하는 것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증가시켜서 국가의 경쟁력(competitiveness)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업의 경제활동을 가장 기본적으로 규제하는 회계와 세무제도도 개별 제도의 복잡성과 불명확성을 개선하는 것과 함께 양자를 조화롭게 시행하는 것을 통해 유·무형의 기업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수익의 범위, 인식시기 및 인식방법과 관련한 본 연구의 기업 회계와 세법 간의 조화를 위한 개선방안은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정부서비스(government service)의 수준을 제고시키는데 공헌함으로써 현 정부가 지향하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목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2장 현행제도의 분석

세법상 수익의 범위나 인식, 측정방법에 대하여 개별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서 계산하는 법인세나 사업소득에 따른 소득세 등의 경우는 기업회계와 독립적이면서도 의존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하지만, 최근 회계기준이 기업회계기준(이하 경우에 따라서는 “K-GAAP”)에서 K-IFRS로 변경되었고, 이러한 변경이 시행되기도 전에 공개초안(Exposure Draft, 이하 경우에 따라서는 “ED”)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K-IFRS의 도입과 세법간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진 이유로는 회계기준의 제정은 더 이상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반면 세법의 제정은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제정하기 때문에 양자 간의 괴리가 더욱 커지고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우선 현행제도에 대한 분석에서 출발하기로 한다.

2011년부터 모든 상장법인은 K-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고 비상장법인은 IFRS-SME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따라서 수익관련 회계처리에서도 K-IFRS와 IFRS-SME가 적용되고, 특히 수익에 대한 기준서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에 대한 공개 초안(ED)인 “고객과의 계약으로부터의 수익(Revenue from Contracts with Customers)”이 제시되었는데 이것은 2011년 6월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2010년말의 세법개정에서도 K-IFRS의 적용을 반영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번 장에서는 수익의 범위·인식시기 및 인식방법과 관련하여 기업회계 및 개별세법을 분석하기로 한다.

제1절 기업회계-국제회계기준

1. 수익의 범위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는 수익에 대한 기준서로서 동(同)기준서는 ① 재화의 판매, ② 용역의 제공, ③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자산에 대한 타인의 사용 사건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여기서 재화는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한 제품과 재판매하기 위하여 매입한 상품(예: 소매상이 매입한 상품, 재판매하기 위해 매입한 토지와 기타 자산) 등을 포함한다.

또한, 용역의 제공은 일반적으로 계약상 합의된 과업을 합의한 기간에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용역은 하나의 회계기간 내에 제공될 수도 있고, 둘 이상의 회계기간에 걸쳐 제공될 수도 있다. 공사관리와 설계용역의 계약과 같이 건설계약과 직접 관련된 용역제공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을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의 유형은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배당수익이 있고 이들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 ① 이자수익: 현금이나 현금성자산 또는 수취할 금액의 사용대가
- ② 로열티수익: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같은 장기성 자산의 사용대가
- ③ 배당수익: 지분상품의 보유자가 특정 종류의 자본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받는 이익의 분배금¹⁾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는 “수익”을 “자본참여자의 출자관련 증가

1) 다만, 제1018호는 다음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분을 제외한 자본의 증가를 수반하는 것으로서 회계기간의 정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의 총유입”으로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익의 범위에는²⁾ 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경제적 효익의 총유입만을 포함하는 반면 판매세, 특정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세금, 부가가치세와 같이 제3자를 대신하여 받는 금액은 기업에 유입되어 자본의 증가를 수반하는 경제적 효익에 해당하지 않고 수익에서도 제외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리관계에서 본인을 대신하여 대리인인 기업이 받는 금액은 경제적 효익의 총유입에는 해당하지만 대리인인 기업의 자본을 증가시키지 않기 때문에 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수수료 금액이 수익에 해당하게 된다.

2. 수익의 인식과 측정

수익에 관한 회계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다. 수익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고, 그 효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는 이러한 기준이 충족되어 수익을 인식하는 상황을 제시하고, 수익인식기준의 적용에 관한 실무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
- ① 리스계약(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적용)
 - ②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는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 투자” 적용)
 -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보험계약
 - ④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이나 처분(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적용)
 - ⑤ 기타 유동자산의 가치변동
 - ⑥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된 생물자산의 최초인식과 공정가치의 변동(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적용)
 - ⑦ 수확물의 최초인식(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적용)
 - ⑧ 광석의 추출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8호 문단 8.

가. 재화의 판매³⁾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 ① 재화의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 ② 판매자는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관리상 지속적인 관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도 아니한다.
- ③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④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
- ⑤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거래상황이 분석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이전은 일반적으로 법적 소유권의 이전이나 재화의 물리적 이전과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대부분의 소매판매가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이전시점이 법적 소유권의 이전시점이나 재화의 물리적 이전시점과 다를 수 있다.

판매자가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를 판매로 보지 않고,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반면 판매자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을 부담한다.⁴⁾

판매자가 부담하는 소유에 따른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8호의 문단 14-19.

4) 이러한 예는 아래와 같다.

- ① 인도된 재화의 결함에 대하여 정상적인 품질보증범위를 초과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 ② 판매대금의 회수가 구매자의 재판매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 ③ 설치조건부 판매에서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설치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
- ④ 구매자가 판매계약에 명시된 사유에 따라 구매를 취소할 권리가 있고, 해당 재화의 반품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거래를 판매로 보아 수익을 인식한다. 예를 들어, 판매자가 판매대금의 회수를 확실히 할 목적만으로 해당 재화의 법적 소유권을 계속 가지고 있더라도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이전되었다면 해당 거래를 판매로 보아 수익을 인식한다. 또 다른 예로 고객이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 판매대금을 반환하는 소매판매를 들 수 있는데, 그 경우 과거의 경험과 기타 관련 요인에 기초하여 미래의 반환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판매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추정반환금액은 부채로 인식한다.

수익은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한다. 판매대가를 수취하거나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해외 판매 시 판매대금의 송금에 대한 외국 정부의 허가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송금이 허가되어 불확실성이 제거된 때에 수익을 인식한다. 그러나 이미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에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해지는 경우에도 이미 인식한 금의 송금에 조정하지 않고, 회수불가능한 금액이나 더 이상 회수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동시에 인식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보통 수익과 비용의 대응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재화의 인도 이후 예상되는 품질보증비와 기타 비용은 수익인식을 위한 다른 조건들이 충족되는 시점에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된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수익을 인식할 수 없고, 이 경우에 재화의 판매로 이미 받은 대가는 부채로 인식한다.

나. 용역의 제공⁵⁾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제공거래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

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8호 문단 20-28.

정할 수 있을 때 보고기간말에 그 거래의 진행률에 따라 인식하는데, 아래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용역제공거래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 ①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②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
- ③ 보고기간말에 그 거래의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④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한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1) 진행기준

거래의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을 진행기준이라 한다. 진행기준에 따르면 수익은 용역이 제공되는 회계기간에 인식하게 된다. 진행기준으로 인식한 수익은 특정 회계기간의 용역활동과 성과의 정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에서도 수익을 진행기준으로 인식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의 규정은 용역제공과 관련된 거래의 수익과 관련 비용의 인식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

수익은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한다. 그러나 이미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에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해지는 경우에도 이미 인식한 수익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회수불가능한 금액이나 더 이상 회수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3) 수입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

거래 상대방과 다음 모든 사항에 대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 ① 수수되는 용역과 관련한 거래당사자들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
- ② 용역제공의 대가
- ③ 결제 방법 및 결제 조건

일반적으로 기업은 효과적인 내부의 재무예산체계와 재무보고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용역제공이 진행됨에 따라 수익금액의 추정치를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수정해야 한다. 그러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반드시 거래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4) 진행률의 결정

거래의 진행률은 다양한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 기업은 수행된 용역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야 하고,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 등으로 진행률을 결정할 수 있다.

- ① 작업수행정도의 조사
- ② 총예상용역량 대비 현재까지 수행한 누적용역량의 비율
- ③ 총추정원가 대비 현재까지 발생한 누적원가의 비율. 현재까지 발생한 누적원가는 현재까지 수행한 용역에 대한 원가만을 포함하고, 총추정원가는 현재까지의 누적원가와 향후 수행하여야 할 용역의 추정원가만을 포함한다.

용역제공이 특정 기간내에 불특정 다수의 활동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 그 진행률을 더 잘 나타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면 실무적 편의를 위하여 정액기준으로 특정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다만, 특정 활동이 다른 활동에 비해 특히 유의적인 때에는 그 활동이 수행될 때까지 수익의 인식을 연기한다.

(5) 신뢰성 있게 성과를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용역제공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식된 비용의 회수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금액만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거래의 초기단계에서는 용역제공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발생한 원가의 회수가능성은 높을 수 있다. 따라서 발생원가의 회수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금액만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즉,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익은 인식하지 않는 것이다.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고 발생한 원가의 회수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수익은 인식하지 않고 발생한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한다.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하는 것을 어렵게 했던 불확실성이 해소된 경우에는 이 경우가 아닌 용역 수익의 일반적인 원칙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게 된다.

다.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⁶⁾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창출되는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은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고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아래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 ① 이자수익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한다.
- ② 로열티수익은 관련된 약정의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 ③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6)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8호 문단 29-34.

이 밖에 이자부 투자자산을 취득하기 전에 지급받지 않은 이자가 발생한 경우 취득 후 처음 받은 이자에 대해서는 취득 이전 및 이후 기간으로 배분하여 취득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만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로열티수익은 약정조건에 따라 발생하므로 일반적으로 그 약정조건을 반영하여 인식한다. 그러나 약정의 실질을 고려할 때 다른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한다. 수익은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한다. 그러나 이미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에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해지는 경우에도 이미 인식한 수익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회수 불가능한 금액이나 더 이상 회수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라. 수익의 측정⁷⁾

수익은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여기서 공정가치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한다.

수익금액은 일반적으로 판매자와 구매자 또는 자산의 사용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고, 판매자에 의해 제공된 매매할인 및 수량리베이트를 고려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대부분의 경우 판매대가는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형태가 된다. 따라서 수익금액은 받았거나 받을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금액이 된다. 그러나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유입이 지연되는 경우 대가의 공정가치는 받았거나 받을 현금의 명목금액보다 작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이자로 신용판매하거나 표면이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어음을 판매대가로 받는 경우이다. 대금

7)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8호의 문단 7 및 9-12.

지불약정이 실질적으로 자금대여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대가의 공정가치는 미래 총수취액을 내재이자율로 할인하여 결정한다. 이때 내재이자율은 다음 중 더 명확히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① 신용도가 비슷한 기업이 발행한 유사 금융상품의 일반적인 이자율
- ② 명목금액의 현재가치를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현금판매금액과 일치시키는 할인율

그 판매대가의 공정가치와 명목금액의 차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에 따라 이자수익으로 인식한다.

성격과 가치가 유사한 재화나 용역의 교환이나 스왑거래는 수익이 발생하는 거래로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원유나 우유와 같은 일반 상품의 경우, 공급기업들이 특정지역의 수요를 적시에 충족시키기 위하여 여러 지역에 있는 재고자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스왑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성격이나 가치가 상이한 재화나 용역의 교환은 수익이 발생하는 거래로 본다. 이때 수익은 교환으로 수취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되,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이 이전되면 이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만일 수취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은 제공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되,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이 이전되면 이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3. 수익과 비용의 인식과 측정-각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는 이하의 적용사례를 첨부하고 있다. 이 사례들은 기준서 아래에 첨부되지만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 사례는 해당 거래의 특정한 측면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수익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관련 요소가 포괄적으로 논의된 것은 아니다. 이 사례에서 수익금액은 신뢰성 있게 측정

할 수 있고, 기업에 유입되는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으며,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고 가정한 것이다.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할 때 서로 다른 국가의 법률에 따라 이 기준서의 인식기준이 충족되는 시점이 다를 수도 있다. 특히,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을 이전하는 시점을 법률이 결정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사례들은 거래가 발생하는 국가의 법률 중 그 재화의 판매와 관련되는 법률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가. 재화의 판매에 관한 사례

(1) 미인도청구 판매

미인도청구 판매('bill and hold' sales)는 재화의 인도가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지연되고 있으나 구매자가 소유권을 가지며 대금청구를 수락하는 판매로서 다음을 충족하면 구매자가 소유권을 가지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 ① 재화가 인도될 가능성이 높다.
- ② 판매를 인식하는 시점에 판매자가 해당 재화를 보유하고 있고, 재화가 식별되며, 구매자에게 인도될 준비가 되어 있다.
- ③ 재화의 인도 연기에 대하여 구매자의 구체적인 확인이 있다.
- ④ 통상적인 대금지급 조건을 적용한다.

그러나 인도시점에 맞추어 재화를 취득하거나 생산하겠다는 의도만 있는 경우에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2) 조건부로 선적된 재화

다음의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 판매된 재화는 각 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도록 예시되어 있다.

- ① 설치 및 검사 조건부 판매

보통 구매자가 재화의 인도를 수락하고 설치와 검사가 완료된 때 수익을 인식한다. 그러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구매자가 재화의 인도를 수락한 시점에 즉시 수익을 인식한다.

- ① 설치과정이 성격상 단순한 경우: 예를 들어, 공장에서 이미 검사가 완료된 텔레비전 수상기의 설치와 같이 포장의 개봉과 전원 및 안테나의 연결만이 필요한 경우
- ② 이미 결정된 계약가액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검사가 수행되는 경우: 예를 들어, 무연탄이나 곡물 등을 인도하는 경우

② 제한적인 반품권이 부여된 판매

반품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면 구매자가 공식적으로 재화의 선적을 수락한 시점이나 재화를 인도 받은 후 반품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③ 수탁자(구매자)가 위탁자(판매자)를 대신해 재화를 판매하는 위탁 판매

위탁자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재화를 판매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④ 인도결제판매(cash on delivery sales)

인도가 완료되고 판매자나 판매자의 대리인이 현금을 수취할 때 수익을 인식한다.

(3) 완납인도 예약판매

완납인도 예약판매(lay away sales)는 구매자가 최종 할부금을 지급한 경우에만 재화가 인도되는 판매로서 이러한 판매는 재화를 인도하는 시점에만 수익을 인식한다. 그러나, 그러한 대부분의 판매가 성사되었다고 경험상 판단되는 경우 재화를 보유하고 있고, 재화가 식별되며, 구매자에게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유의적인 금액의 예치금이 수령되었

을 때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4) 선수금 수령 판매

현재 재고가 없는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미리 판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취하는 주문으로 예를 들어, 생산중인 재화나 제3자가 고객에게 직접 인도하는 재화의 경우는 고객에게 재화를 인도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5) 판매 후 재매입 약정

판매 후 재매입 약정은 판매자가 판매와 동시에 해당 재화를 나중에 재매입할 것에 동의하거나 재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하거나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재매입을 요구할 수 있는 풋옵션이 있는 약정(스왑거래는 제외)을 의미한다.

금융자산을 제외한 자산에 대한 판매후 재매입 약정의 경우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되고 이에 따라 수익이 인식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약조건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법적 소유권이 이전되었더라도 판매자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러한 거래는 금융약정이며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래가 아니다. 금융자산에 대한 판매 후 재매입 약정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적용한다.

(6) 중간상에 대한 판매

유통업자·판매자 또는 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기타 상인 등과 같은 중간상에 대한 판매에 따른 수익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그러나 구매자가 실질적으로 대리인 역할을 한다면 이러한 거래를 위탁판매로 처리한다.

(7) 출판물 및 이와 유사한 품목의 구독

해당 품목의 가액이 매기 비슷한 경우에는 발송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다. 그러나 품목의 가액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에는 발송된 품목의 판매가액이 구독신청을 받은 모든 품목의 추정 총판매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8) 대가가 분할되어 수취되는 할부판매

이자부분을 제외한 판매가격에 해당하는 수익을 판매시점에 인식한다. 판매가격은 대가의 현재가치로서 수취할 할부금액을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이다. 이자부분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가득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나. 용역의 제공에 관한 사례

(1) 설치수수료

설치수수료는 재화가 판매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재화의 판매에 부수되는 설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치의 진행률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한다.

(2) 제품판매가격에 포함된 용역수수료

제품판매가격에 판매 후 제공할 용역(소프트웨어 판매의 경우 판매 후 지원 및 제품개선 용역)에 대한 식별가능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이연하여 용역수행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연되는 금액은 약정에 따라 제공될 용역의 예상원가에 이러한 용역에 대한 합리적인 이윤을 가산한 금액이다.

(3) 광고수수료

광고매체수수료는 광고 또는 상업방송이 대중에게 전달될 때 인식하고, 광고제작수수료는 광고 제작의 진행률에 따라 인식한다.

(4) 보험대리수수료

보험대리인이 추가로 용역을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보험대리인은 대리인이 받았거나 받을 수수료를 해당 보험의 효과적인 개시일 또는 갱신일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대리인이 보험계약기간에 추가로 용역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연하여 보험계약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한다.

(5) 금융용역수수료

금융용역수수료의 수익인식은 그 수수료의 부과 목적과 관련 금융상품의 회계처리의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금융용역수수료라는 명칭은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과 본질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상품의 유효이자율의 일부인 수수료,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가득되는 수수료 및 유의적인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가득되는 수수료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① 금융상품의 유효이자율의 일부인 수수료

이러한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유효이자율에 대한 조정항목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금융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상품을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에 수수료를 수익으로 인식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으로 분류되

는 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개설이나 취득에 관련된 개설수수료는 차입자의 재무상태 평가, 보증, 담보 및 기타 보장약정과 관련된 평가 및 사무처리, 금융상품의 조건에 대한 협상, 관련 서류의 준비 및 작성, 거래의 완료 등의 활동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다. 이러한 수수료는 관련 금융상품에 대한 관여를 만들어내는 일부 요소이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관련된 거래원가와 함께 이연하여 유효이자율에 대한 조정항목으로 인식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대출약정(loan commitment)을 개설한 기업이 수취하는 약정수수료는 특정한 대출계약(lending arrangement)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고 그 대출약정(loan commitment)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취된 약정수수료는 금융상품을 취득하기 위한 지속적 관여의 대가로 보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관련된 거래원가와 함께 이연하여 유효이자율에 대한 조정항목으로 인식한다. 만일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약정기간이 종료하면 약정수수료는 종료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대출약정(loan commitment)은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부채의 발행에 따라 수취하는 개설수수료는 금융부채를 발행하기 위한 관여의 일부가 된다. 금융부채가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분류되지 않으면 수취된 개설수수료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정의된 바와 같은 발생된 관련 거래원가와 함께 금융부채의 최초장부금액에 포함하고 유효이자율에 대한 조정항목으로 인식한다. 금융부채의 유효이자율의 일부인 개설수수료와 거래원가는 투자관리용역과 같은 용역을 제공하는 권리와 관련된 개설수수료 및 거래원가와 구분한다.

②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가득되는 수수료

대출과 관련된 관리용역의 제공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는 관리용역이 제공될 때 수익으로 인식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대출약정(*loan commitment*)의 개설에 대한 약정수수료는 특정한 대출계약(*lending arrangement*)이 체결될 가능성이 낮고 그 대출약정(*loan commitment*)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약정수수료를 약정기간에 걸쳐 기간에 비례하여 수익으로 인식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대출약정(*loan commitment*)은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투자관리에 대해 부과되는 수수료는 용역을 제공할 때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또한 투자관리계약의 체결에 직접 귀속되는 증분원가가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며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하고 회수가능성이 높다면 자산으로 인식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르면 증분원가는 투자관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발생되지 않았을 원가이다. 이러한 자산은 투자관리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익에 대한 계약상 권리를 나타내며 관련 수익을 인식함에 따라 상각한다. 만일 여러 투자관리계약들의 포트폴리오를 보유한다면 포트폴리오별로 회수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다. 금융용역계약 중에는 한 가지 이상의 금융상품의 개설 및 투자관리용역의 제공 모두에 관련된 경우도 있다. 지분증권집합의 관리와 연계된 월납 장기 저축계약이 이러한 예에 해당한다. 계약 제공자는 금융상품의 개설에 관련된 거래원가를 투자관리용역을 제공할 권리의 확보에 소요된 원가와 구분한다.

③ 유의적인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가득되는 수수료

유의적인 행위를 완료한 시점에 수수료를 수익으로 인식한다. 주식배

정수수료는 주식배정을 완료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투자자와 차입자 간에 대출약정을 위한 중개수수료 대출약정이 이루어진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신디케이트론 주선수수료는 신디케이트론을 주선하지만 그 중 어떤 부분도 자신의 대출로서 보유하지 않거나 또는 유사한 위험에 대하여 다른 참여자와 동일한 유효수익을 가지며 신디케이트에 참여하는 경우, 기업이 수취하는 신디케이트론 주선수수료는 신디케이트 방식의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이다. 이러한 수수료는 신디케이트 방식의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6) 입장료

예술공연, 축하연, 기타 특별공연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행사가 개최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하나의 입장권으로 여러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의 입장료수익은 각각의 행사를 위한 용역의 수행된 정도가 반영된 기준에 따라 각 행사에 배분하여 인식한다.

(7) 수강료

강의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한다.

(8) 입회비, 입장료 및 회원가입비

제공되는 용역의 성격에 따라 수익인식이 결정된다. 만일 회비가 회원가입만을 위한 것이고 기타 모든 용역이나 제품의 제공대가가 별도로 수취되거나 별도의 연회비가 있다면 이러한 회비는 회수에 유의적인 불확실성이 없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만일 회비를 납부하고 회원가입기간 동안 무상으로 용역이나 간행물을 제공받거나 재화나 용역을 비회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효익이 제공되는 시기, 성격 및 가치를 반영하는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다.

(9) 프랜차이즈 수수료

프랜차이즈 수수료는 창업지원용역과 운영지원용역, 설비와 기타 유형자산 및 노하우 제공에 대한 대가를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수수료는 부과되는 목적을 반영하는 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한다. 프랜차이즈 수수료의 적절한 인식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설비와 기타 유형자산의 제공

해당 자산을 인도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할 때 제공하는 자산의 공정가치에 기초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② 창업지원용역과 운영지원용역의 제공

운영지원용역의 제공에 대한 수수료는 창업지원용역 수수료의 일부이거나 별도의 수수료임에 상관없이 용역이 제공됨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한다. 별도의 수수료가 운영지원용역의 원가를 회수하고 합리적인 이윤을 제공하는데 불충분하고, 창업지원용역 수수료의 일부가 이러한 운영지원용역의 원가를 회수하고 합리적인 이윤을 제공한다면 창업지원수수료의 일부를 이연하여 운영지원용역이 제공됨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한다.

계약에 따라 프랜차이즈 본사는 제3자에게 판매하는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 또는 적정이윤이 보장되지 않는 가격으로 설비, 재고자산, 또는 기타 유형자산을 가맹점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정원가를 회수하고 적정이윤을 보장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용역 수수료의 일부를 이연한 후, 설비 등을 가맹점에 판매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한다. 나머지 창업지원용역 수수료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모든 창업지원용역과 그 밖의 의무(예: 가맹점입지선정, 종업원교육, 자금조달, 광고에 대한 지원)를 실질적으로 이행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일정지역에 대한 프랜차이즈계약에 따른 창업지원용역과 그 밖의 의

무는 그 지역에 설립되는 가맹점 수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경우에 창업지원용역에 관련되는 수수료는 실질적으로 창업지원용역이 완료된 가맹점 수에 비례하여 수익으로 인식한다.

만일 창업지원용역 수수료가 장기간에 걸쳐 회수되고 모두 회수하는데 유의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할부금을 현금으로 수취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③ 프랜차이즈 운영지원 수수료

계약에 의한 권리의 계속적인 사용에 부과되는 수수료나 계약기간 동안 제공하는 기타 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권리를 사용하는 시점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④ 대리거래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의 거래에서 본사가 실제로는 가맹점의 대리인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게 공급할 재화를 대신 주문하고 원가로 인도하는 거래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거래에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10) 주문형 소프트웨어의 개발 수수료

주문개발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는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이 때 진행률은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소프트웨어 인도 후 제공하는 지원용역을 모두 포함하여 결정한다.

다.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

수수료와 로열티수익은 기업의 자산(예: 상표권, 특허권, 소프트웨어,

음악저작권, 녹화권, 영화필름)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되는데, 보통 계약의 실질에 따라 인식한다. 실무적으로는 정액기준으로 인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라이선스 사용자가 특정기간 동안 특정기술을 사용할 권리를 갖는 경우에는 약정기간 동안 정액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다.

라이선스 제공자가 라이선스 제공 이후에 수행할 추가적인 의무가 없으며 사용자에게 라이선스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해지불능계약에 따라 일정한 사용료나 환급불능 보증금을 받는 대가로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실질적인 판매이다. 예를 들어 라이선스 제공자가 소프트웨어 인도 후 후속 의무가 없는 경우의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이 이에 해당된다. 또 다른 예로는 라이선스 제공자가 배급업자를 통제할 수 없고 흥행수익으로부터 추가적인 수익을 수취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 시장에서 영화를 상영할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판매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어떤 경우에는 라이선스 수수료나 로열티수익의 수취 여부가 미래의 특정사건의 발생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경우 수수료나 로열티수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때에만 수익으로 인식하는데 보통 특정사건이 실제로 발생하는 시점이다.

라. 인식과 측정의 문제

대리관계에서 본인을 대신하여 대리인인 기업이 받는 금액은 경제적 효익의 총유입에 해당하지만 대리인인 기업의 자본을 증가시키지 않으므로 수익이 아니다. 대신에 이 경우 수익은 수수료 금액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기업이 본인으로서 활동하는지 또는 대리인으로서 활동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판단하고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이 재화나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에 노출된다면 기업은 본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이다. 기업이 본인으로 활동하는 것

을 제시하는 특성은 다음과 같다.

- ① 기업은 고객에 대한 재화나 용역 제공이나 주문의 이행에 대하여 주된 책임을 부담한다. 예를 들어 고객이 주문하거나 구매한 재화나 용역을 수락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
- ② 고객이 주문하기 전후나 인도 중에 또는 반환 시점에 기업이 재고 위험을 부담한다.
- ③ 기업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예를 들어 추가적인 재화나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가격결정 권한을 갖는다.
- ④ 기업이 고객으로부터 수취할 금액에 대하여 고객의 신용위험을 부담한다.

기업이 재화판매나 용역의 제공에 관련된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에 노출되지 않으면 기업은 대리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이다. 기업이 대리인으로서 활동을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한 가지 특성은 거래당 고정된 수수료 또는 고객에게 청구된 금액의 특정 비율로 기업이 가득하는 금액이 미리 결정된다는 것이다.

제2절 기업회계-일반기업회계기준

1. 수익의 범위⁸⁾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은 수익을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수익인식의 목적은 재화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과, 이자·배당금·로열티와 같이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 등의 인식기준을 제시하는 데 있다.

또한, 동(同)규정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8)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문단 1-4.

및 배당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자산에 대한 타인의 사용에서⁹⁾ 발생하는 수익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여기서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① 이자수익: 현금이나 현금성자산 또는 받을 채권의 사용대가
- ② 배당금수익: 지분투자에 대하여 받는 이익의 분배금액
- ③ 로열티수익: 산업재산권이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무형자산의 사용대가

이상의 내용과 같이 수익의 범위에 대하여는 K-IFRS와 IFRS-SME 간에 수익의 정의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수익의 인식과 측정

수익의 인식과 측정은 일반적으로¹⁰⁾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또는 받을 대가(이하 “판매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매출에누리와 할인 및 환입은 수익에서 차감한다. 대부분의 경우 판매대가는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의 금액이다.

9) 단, 다른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거나 이 절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다음의 거래와 회계사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6.3).

- ① 리스계약(제13장 “리스”)
- ②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는 투자자산으로부터의 배당금(제8장 “지분법” 및 제9장 “조인트벤처 투자”)
- ③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 ④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또는 처분(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 ⑤ 건설형 공사계약(제16장 제2절)
- ⑥ 농산물, 임산물 및 가축의 자연적 가치증가(제27장 “특수활동”)
- ⑦ 광물의 추출(제27장 “특수활동”)
- ⑧ 광석의 추출

10)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문단 5-7.

그러나, 판매대가가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이후 장기간에 걸쳐 유입되는 경우에는 그 공정가치가 미래에 받을 금액의 합계액(이하 “명목금액”)보다 작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무이자로 신용판매하거나 판매대가로 표면이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어음을 받는 경우에는 판매대가의 공정가치가 명목금액보다 작아진다. 이 때 공정가치는 명목금액의 현재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와 명목금액과의 차액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에 따라 현금회수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으로 인식한다. 현재가치의 측정에 사용되는 할인율은 신용도가 비슷한 기업이 발행한 유사한 금융상품(예: 회사채)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이자율과 명목금액의 현재가치와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의 현금판매금액을 일치시키는 유효이자율 중 보다 명확히 결정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성격과 가치가 유사한 재화나 용역간의 교환은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래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예로는 정유산업 등에서 공급회사 간에 특정 지역의 수요를 적시에 충족시키기 위해 재고자산을 교환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성격과 가치가 상이한 재화나 용역간의 교환은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래로 본다. 이 때 수익은 교환으로 취득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되,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의 이전이 수반되면 이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만일 취득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으면 그 수익은 제공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의 이전이 수반되면 이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가. 재화의 판매¹¹⁾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한다.

11)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문단 10.

- ①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 ②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다.
- ③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④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 ⑤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나. 용역의 제공¹²⁾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고 본다.

- ① 거래 전체의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②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 ③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④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하여 투입하여야 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용역제공거래에서 이미 발생한 원가와 그 거래를 완료하기 위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의 합계액이 해당 용역거래의 총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과 이미 인식한 이익의 합계액을 전액 당기손실로 인식한다.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생한 비용의 범위 내에서 회수가 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고 발생한 원가의 회수가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고 발생한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한다.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하는 것을 어렵게 만

12)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문단 11-14.

들었던 불확실성이 해소된 경우에는 일반 원칙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다.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¹³⁾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 배당금, 로열티 등의 수익은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아래의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 ① 이자수익은 원칙적으로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 ②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 ③ 로열티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 배당금, 로열티로 분류할 수 없는 기타의 수익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발생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식한다.

- ① 수익가득과정이 완료되었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완료되었다.
- ②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③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3절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에 대한 공개초안¹⁴⁾

1. 미국회계기준에서의 수익의 인식

현행 미국회계기준(US-GAAP(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13)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문단 15-17.

14) 이번 절은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의 2010. 8. 17.자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Principles))과 IFRS 간의 서로 다른 수익인식 요건 때문에 두 기준의 해당 규정들의 개선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US-GAAP은 특정한 산업 또는 거래에 대한 방대한 수익인식 개념과 수많은 요건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¹⁵⁾ 경제적으로 유사한 거래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회계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현재 US-GAAP 상은 다양하고 세분하게 수익을 정의해 놓았기 때문에 원칙중심의 회계처리인 IFRS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2.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

수익인식에 대한 IFRS의 지침은 IAS(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18의 “수익”과 IAS 11의 “건설계약”으로 비교적 단순하지

15) 구체적으로, 현행 US-GAAP상의 수익에 대한 기준서의 목록은 Overall(605-10), Products(605-15), Services(605-20), Multiple-Element Arrangements(605-25), Milestone Method(605-28), Rights to Use(605-30), Construction-Type and Production-Type Contracts(605-35), Gains and Losses(605-40), Principal Agent Considerations(605-45), Customer Payments and Incentives(605-50), Agriculture(905-605), Airlines(908-605), Contractors-Construction(910-605), Contractors-Federal Government(912-605), Development Stage Entities(915-605), Entertainment-Broadcasters(920-605), Entertainment-Cable Television(922-605), Entertainment-Casinos(924-605), Entertainment-Films(926-605), Entertainment-Music(928-605), Extractive Activities-Oil and Gas(932-605), Financial Services-Brokers and Dealers(940-605), Financial Services-Depository and Lending(942-605), Financial Services-Insurance(944-605), Financial Services-Investment Companies(946-605), Financial Services-Mortgage Banking(948-605), Franchisors(952-605), Health Care Entities(954-605), Non-For-Profit Entities(958-605), Real Estate-General(970-605), Real Estate-Common Interest Realty Associations(972-605), Real Estate-Real Estate Investment Trusts(974-605), Real Estate-Retail Land(976-605), Real Estate-Time-Sharing Activities(978-605), Regulated Operations(980-605) 및 Software(985-605)와 같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만 복잡한 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지침을 적용하기 어렵고, 복수요소 약정에 대한 수익인식과 같은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지침만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두 가지 회계기준의 제정기구인 US FASB(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와 IASB(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는 수익인식 원칙을 명확히 하고 기존의 수익인식 기준과 실무의 비일관성과 단점을 제거하고, 수익인식 이슈를 다루기 위해 보다 확고한 개념체계를 제공하고, 기업, 산업, 국가 및 자본시장 간의 수익인식 실무의 비교가능성을 증진하고, 기업이 따라야 할 요구사항의 개수를 줄임으로써 재무제표의 작성을 단순화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공동으로 공개초안(ED)을 개발했으며, IFRS에 대한 변경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은 2010년 9월 24일까지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회계기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에 ED에 대한 우리나라의 의견을 2010년 10월 22일에 IASB에 제출하였다.

구체적으로, ED는 기업이 고객에게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기 위한 계약으로 발생하는 수익과 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보고하기 위해 적용하는 원칙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문단5), 고객과의 계약 중 IAS 17 “리스” 범위의 리스계약, IFRS 4 “보험계약” 범위의 보험계약, IFRS 9 “금융상품” 또는 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및 당해 교환상대방이 아니라 고객에게 판매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facilitate) 동일 사업부분에 속한 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비화폐성 교환(예: 특정한 지역에서 실시간으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원유의 교환)을 제외한 모든 계약에 적용할 예정이다(문단 6). ED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핵심원칙

1) 기업이 재화 또는 용역의 교환으로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으로,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것을 표현할(depict) 수 있도록 수익을 인식할 것을 요구함(IN¹⁶⁾ 6).

2) 핵심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다음을 수행함(IN 9).

- ①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
- ② 계약에 포함된 각각의 이행의무를 식별
- ③ 거래 금액을 결정
- ④ 각각의 이행의무에 거래가격을 배분
- ⑤ 기업이 각 이행의무를 충족할(satisfy) 때 수익을 인식

3) ED 규정에서는 원가에 대한 회계처리를 명시하고 있음. 계약획득 원가(the cost of obtaining a contract)는 발생시 비용으로 인식함. 만약 계약을 이행(fulfill)하는데 발생한 원가가 다른 기준서에 따라 자산화될 수 없는 경우 그 중 다음의 원가만 자산화할 수 있음(IN 10).

- ① 계약에 직접적으로 관련됨.
- ② 미래에 이행의무를 충족하는데(satisfy) 사용될 기업의 자원을 창출하거나 증가시킴.
- ③ 회수될(to be recovered) 것으로 예상됨.

나.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

재화와 용역의 대가금액의 상호의존성 유무 등을 판별하여 하나의 계약을 둘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거나 둘 이상의 계약을 하나로 통합함(문단 12-17).

16) “IN”이란 “introduction”의 약자로서 ED에서 사용한 용어이다.

다. 계약에 포함된 각각의 이행의무를 식별

1) 이행의무는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기 위해 고객과의 계약에서 강제가능한(enforceable) 약속임(명시적 또는 묵시적)(IN 12).

2) 만약 기업이 하나 이상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다고 약정하고 재화나 용역이 구별된다면(distinct), 각 약정된 재화나 용역은 별개의(separate) 이행의무로 회계처리함(IN 13).

3) 재화나 용역은 다음의 경우에 구별됨(distinct)(IN 14, 문단 23).

- ① 기업 또는 다른 기업이 동일한(identical) 또는 유사한 재화나 용역을 별도로(separately) 판매하거나
- ② 재화나 용역이 구별된 기능을 가지고 구별된 이윤(profit margin)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별도(separately)로 판매할 수 있음.

라. 거래금액을 결정

1) 거래가격(transaction price)은 계약에서 약속된 재화나 용역의 이전에 따른 교환으로 고객으로부터 받거나 받을 수 있는 대가의 금액임(IN 15).

2) 대가금액이 변동가능한(variable) 경우(예: 리베이트, 보너스, 패널티 또는 고객의 신용위험 영향) 거래가격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 이행의무 충족시(satisfy) 수익을 인식함. 거래가격은 다음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음(IN 16).

- ① 기업은 유사한 유형의 계약 경험을 가지고 있다(또는, 자체적인 경험이 없다면 다른 기업의 경험을 알 수 있다.).
- ② 상황의 중요한 변화가 예상되지 않으므로 기업의 경험이 당해 계약과 목적적합성이 있다.

3) 거래가격을 결정할 때 기업은 다음의 영향을 고려함(IN 17, 문단 42-49).

- ① 회수가능성(collectibility)
- ② 화폐의 시간가치(the time value of money)
- ③ 비현금 대가(non-cash consideration)
- ④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consideration payable to customer)

마. 각각의 이행의무에 거래가격을 배분

1) 계약 개시시점에(at contract inception) 별도의(separate) 모든 이행의무 각각에 대해 당해 의무의 기초인 재화나 용역의 독립판매가격(the stand-alone selling prices)의 비율로 거래가격을 배분함. 만약 독립판매 가격이 직접적으로 관찰가능하지 않다면, 그것을 추정함(IN 18).

2) 상황변화를 반영하고, 별도의 이행의무에 거래가격의 변화를 배분할 수 있도록, 계약기간(the life of the contract)에 걸쳐 거래가격을 갱신함(update)(IN 19).

바. 기업이 각 이행의무를 충족할 때 수익을 인식

1) 기업은 고객에게 약정된 재화나 용역의 이전에 의하여 이행의무를 충족할(satisfy) 때 수익을 인식함. 재화나 용역은 고객이 그 재화나 용역의 통제(control)를 획득할 때 이전됨(IN 20, 문단 25).

2) 고객이 재화나 용역의 사용을 지시하는(direct) 능력을 가지고, 그것으로부터 효익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때 고객은 통제를 획득함.

3) 통제는 다른 기업이 재화나 용역의 사용을 지시하거나 그것으로부터 효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는(prevent) 능력을 포함함(IN 21, 문단 25-31).

4) 기업이 이행의무를 충족할 때 충족된 이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함. 만약, 계약개시 후에 거래가격이 변동한다면 거래가격의 변동 시점에 이미 충족된 이행의무에 배분되는 변동금액은 거래가격이 변동된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됨(IN 22).

5) 별도(separate) 이행의무의 기초가 되는(underlying) 약정 재화나 용역이 고객에게 계속적으로(continuously) 이전될 때 기업은 고객으로의 재화나 용역 이전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하나의 수익인식방법을 그 이행의무에 적용함. 인정되는 방법에는 기업의 산출물이나 투입물에 기초한 방법과 시간의 경과에 기초한 방법을 포함함(IN 23, 문단 32-33).

제4절 법인세법

1. 익금의 범위

법인세법은 제15조에서 익금을 규정하여 수익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상 익금이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¹⁷⁾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규정하여 포괄적인 순자산증가설을 취하고 있고, 동 법과 동 법 시행령에서 추가적으로 익금의 특수한 사항들을 구별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특수한 익금 항목들은 아래와 같다.

- ①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 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17)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것은 아래의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www.samili.com 에서 인용함).

- ①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이나 조세정책상 익금불산입항목으로 규정하는 것
- ②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는 아니지만 익금산입항목으로 규정하는 것

- ②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전술한 바와 같이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익금을 순자산증가설에 의하여 정의하고 있고,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수익의 종류와 범위에 대하여는 동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각 거래 유형별로 대표적인 수익을 예시적으로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동 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거래라도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이라면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에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에금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② 자산의 양도금액
- ③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 ④ 자산의 임대료
- ⑤ 자산의 평가차익
- ⑥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 ⑦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 ⑧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 ⑨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 ⑩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어느 하나 및 동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 ⑪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 등”)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정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동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 ⑫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2.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기업회계는 발생주의를 전제로 하여 수익을 실현주의에 따라 인식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권리의무확정주의는 어떠한 시점에서 익금과 손금을 확실히 인식할 수 있을 것인가를 법률적 측면에서 포착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의 주제인 수익에 대응되는 법인세법상 익금의 측면에서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살펴보면 이것은 조세공평의 확실적인 법적 기준의 요청에서 도입된 것으로서 어떤 의미에서는 실현주의의 변형일 수 있다.¹⁸⁾ 즉, 실현주의가 기본으로 하고 있는 인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보다 분명한 기준이 요청되는 세법에서

18) www.samili.com에서 인용함.

권리라고 하는 법적 개념을 통해 명확성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확정이란 반드시 민법이나 상법상의 권리 확정(권리의 성립요건이라던가 유효요건을 충족하고 권리로서 법적으로 보장된 상태)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권리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분설하면 특정한 채권이 성립하고 동(同) 채권에 근거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체적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실이 발생하고 채권의 금액을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 제40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여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는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의 네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각각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¹⁹⁾

상품(부동산 제외)·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의 판매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로 한다. 상품 등의 시용판매는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다만, 일정기간 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이 취득하

19)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외화대금”)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로 한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자산의 위탁매매는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로 한다.

위의 경우에 법인이 매출할인을 하는 경우 그 매출할인금액은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그 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장기할부조건으로²⁰⁾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판매 또는 양도한 자산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²¹⁾

20)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 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또한,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당해 채권의 회수기간 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동조 제5항).

21) 이 경우 인도일 이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보며, 법인이 장기할부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이 때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산한 경우 해당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해당 채권의 회수기간 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나.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에서 “건설 등”)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작업진행률”)²²⁾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

2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 ① …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건설의 경우: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작업시간 등”)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 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text{작업진행률} = \text{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div \text{총공사예정비}$$
 2. 제1호 외의 경우: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 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 ③ 영 제6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익금

$\text{계약금액} \times \text{작업진행률} - \text{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 ④ 영 제69조 제2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

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 등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²³⁾ 할 수 있다.

다.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61조 제2항 각호의 금융회사 등이 금융채무 등 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채권의 공동추심을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수입하는 배당금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위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3) 법인세법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부금·보증료 또는 수수료(이하 “보험료 등”)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보험료 등이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보험료 등을 제외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상당액 등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형화된 거래방식으로 동법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투자회사 등이 결산을 확정할 때 증권 등의 투자와 관련된 수익 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과 배당소득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상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동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은 제외한다.)에 귀속되는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각호의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는 이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111조 제6항에 따른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라.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²⁴⁾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로 하고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이 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

24)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62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3 제4항의 규정)을 적용 받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법인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상환할 사채금액의 합계액에서 사채발행가액(사채발행수수료와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사채할인발행차금”)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및 매출채권 또는 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이 매각된 것으로 보아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

제5절 소득세법

1. 과세대상

소득세법 제19조는 사업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농업(작물재배업은 제외한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²⁵⁾ 발생하는 소득

25)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제조업의 범위)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제조업으로 본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2.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²⁶⁾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26)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 수익인식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는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호에 따른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상품(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이하 “상품 등”)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상대방이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 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특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의 위탁판매

수탁자가 그 위탁품을 판매하는 날

4.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상품 등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다만,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해 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된 날. 이 경우 인도일 이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은 인도일에 수입한 것으로 보며, 장기할부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 그 폐업일 현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상응하는 비용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이를 산입한다.

5.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건설 등”)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7. 무인판매기에 의한 판매

당해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때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0. 어음의 할인

그 어음의 만기일. 다만, 만기 전에 그 어음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양도일로 한다.

10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상당액은 그 계상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당해 채권의 회수기간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은 이를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0의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실제로 수입된 날

10의4. 자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따른 날
가.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

그 정해진 날

나.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다.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은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화해 등으로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지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와 그 밖의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판결·화해 등이 있는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해서는 가목에 따른 날로 한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제6절 부가가치세법

1.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은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이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수익이란 매출세액의 계산의 대상이 되는 이 세가지 과세대상을 의미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는 재화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²⁷⁾ 한다고 정의하고 있

27)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다. 이 외에도 부가가치세법은 간주공급 대상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추가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 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²⁸⁾
-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²⁹⁾

28)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자가공급의 범위)

- ①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
- ②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9)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개인적 공급 및 사업상 증여의 범위)

- ①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②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과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③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남아 있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제외)

부가가치세법 제6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항목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³⁰⁾ 해당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는 용역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

3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 ① 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질권·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④ 법 제6조 제6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지방세법 제117조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에 따라 물납하는 것을 말한다.

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³¹⁾ 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수익으로 인식되는 항목은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보세구역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재화의 수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만, 제2호의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³²⁾

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취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2. 거래시기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법상 대상 거래시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31) 부가가치세법 제18조(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
3. 산업상·사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32) 이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0조에서 아래와 같이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0조(재화의 수입)

① 법 제8조에 규정하는 재화의 수입은 동조 각호의 물품을 우리나라의 영토 및 우리나라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미치는 곳에 인취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되는 때로 한다. 이 두 가지 모두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한다.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사업자가 위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또한,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와³³⁾ 제22

3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1의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5.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6. 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7. 법 제6조 제4항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
8.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취하는 때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 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 나. 원양어업 및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

조에서³⁴⁾³⁵⁾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액이 확정되는 때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

11.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입신고수리일

12. 제14조 제2항 제2호와 관련하여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되는 때

가. 창고증권을 소지한 사업자가 지정창고에서 실물을 인취한 후 보세구역안의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때

나. 실물인취에 따른 당해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수리일

다. 국내로부터 제1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임치된 임치물이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에는 그 반입신고 수리일

②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조 제5항 단서의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또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도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제1항 제2호의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연부 그 밖의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당해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3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 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

제7절 교육세법-금융업자를 중심으로

교육세법 제5조는 금융업자의 수익금액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있어서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 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스와프거래와 관

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

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유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후 수영장·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는 대가를 입주 전에 미리 받고 시설 내 수영장·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

라. 그 밖에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용역

35)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2. 국고금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하는 경우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영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

2. 영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3. 영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 또는 통신 등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여기서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이란 각 과세기간분에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수수료·보증료·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³⁶⁾³⁷⁾ 정한다.

36)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1. 수입할인료 2.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3. 신탁보수 4. 대여료

5. 외환매매익

5의2. 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금융·보험업자(이하 “금융·보험업자”라 한다.)의 파생상품거래의 손익과 해당 파생상품거래와 관련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금융투자상품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이익

5의3. 금융·보험업자의 파생결합증권거래의 손익과 해당 파생결합증권거래와 관련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금융투자상품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이익

6. 수입임대료 7. 고정자산처분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자산·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

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환입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다. 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해당 채권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라. 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

3. 국고보조금·보험차익·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

3의2.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 국외의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6. 보험회사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출재보험 수수료·출재이익수수료·이재조사비

7. 법 별표 제7호·제14호·제15호 및 제18호의 금융·보험업자가 영위하는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8. 법 별표 제18호의 금융·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

9. 법 별표 제18호의 금융·보험업자가 국외에서 수행한 투자중개업무에 대한 수수료

1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신용카드 발행자”라 한다)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라 한다)가 다른 경우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신용카드 등의 거래로 인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가맹점수수료 중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11. 법 별표 제20호의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다음 각목의 수익금액

가. 보증료

나. 무역어음 재할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다. 비거주자로부터 수입한 이자 및 수수료

③ 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수익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로 인한 리스로 중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운용리스 원금”이라 한다) 외의 수익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⑤ 전당포영업자의 수익금액은 수입이자·수입할인료 및 유질물처분익의 합계액으로 한다.

⑥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전영업자의 수익금액은 외국환매매익 및 수입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⑦ 금전대부업자의 수익금액은 수입이자·수입할인료·수입수수료 및 수입대여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⑧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수익금액은 다음 각 호 외의 수익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운용리스 원금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업무와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만 영위할 수 있도록 정한 업무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금액

37)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보험료 수익금액의 계산)

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보험료·수해보험료·전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법인세법 제30조 제1항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해약환급금(중도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금액 중 미경과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2. 당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해약환급금(중도해약으로 인하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³⁸⁾

제8절 외국사례의 분석

이번 절에서는 수익인식 등과 관련한 미국과 일본의 회계기준 및 세법 내용을 개관하기로 한다.

1. 미 국

가. IFRS와 US-GAAP 간의 수익인식의 차이점³⁹⁾

US-GAAP의 수익 인식에 대한 지침(guidance)은 the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FASB), the Emerging Issues Task Force(EITF), the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AICPA) 및 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EC)에 의해서 제공된 중요한 기준들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다. 동(同) 지침은 매우 구체적이고 산업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반면 the FASB의 codification project는 항상 동일하게 US-GAAP의

여 지급한 금액 중 미경과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출재보험료(제4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관계되는 출재보험료를 제외한다)의 합계액. 다만, 당기 중에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당기에 한정하여 당기말 책임준비금에 가산한다.

가.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

나. 사고 등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으로서 보험료 산출기초에 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로만 구성된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

38) 교육세법 제7조.

39) 본 절은 www.pwc.com의 “IFRS and US GAAP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보고서 중에서 Revenue Recognition의 관련 부분을 바탕으로 분석한 것이다.

유권해석을 하며 이것은 지침의 본질(nature) 또는 버전(version)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IFRS는 두 가지 주요 수익인식 기준과 네 가지 수익 중심의 해석을 가지고 있다. IFRS에서 내포하고 있는 광범위한 원칙은 일반적으로 향후 지침 또는 특정한 산업에 대하여 예외없이 적용된다.

US-GAAP과 IFRS 간의 산업특성에 의한 차이에 대하여 간략하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소프트웨어 수익의 인식에 대한 US-GAAP의 지침은 수익을 인식하기 전에 공정가치의 VSOE(vendor-specific objective evidence)의⁴⁰⁾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IFRS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특정산업에 대한 US-GAAP의 다양한 지침은 경제적으로 비슷한 거래에 대한 상반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예컨대,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인증서비스는 종종 경제적으로 케이블TV 회사에서 제공하는 접속서비스와 유사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US-GAAP의 지침은 이러한 거래들에 대한 회계처리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경제적 유사 거래들에 대한 수익인식시기가 다양해질 수 밖에 없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IFRS는 최소한의 산업의 특성에 대한 지침을 규정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원칙을 기본으로 한 접근 방법에 의해 모든 기업들과 산업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적용하게 된다.

우발상황에 대한 금액과 수익인식에 대한 요소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의 여부는 US-GAAP과 IFRS 사이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US-GAAP에서는 수익인식은 고정된 가격에 의하고 이미 정해진 가격결정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발상황이 해결될 때까지는 일반적으로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IFRS는 모든 우발상황에서의 수익을

40) 미국의 SEC는 Enlon사의 분식회계 사태 이후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회계조작 및 분식회계를 방지하기 위해 라이선스료와 기술지원서비스료 및 교육료를 모두 엄격하게 분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포함하여 소송 중의 수익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고, 회계 실체에 의한 거래와 관련성이 있고, 경제적 수익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다면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수익인식의 시기에 대한 차이이며, IFRS에서는 수익으로 인식하는 시기가 US-GAAP에 비해서 좀 더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일반적인 수익인식

IFRS의 개념은 원칙에 근거하여 인식하고 US-GAAP은 원칙 뿐만 아니라 규정에 근거하여 인식한다.

〈표 1-1〉 일반적인 수익인식

US GAAP	IFRS
수익인식의 지침 일반적으로 수익에 대한 중요 지침은 - 실현되었거나 실현될 - 가득된 수익인식은 교환거래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함. 수익은 교환거래가 발생하기 전까지 인식하지 않음. 이러한 개념은 구체적인 규정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킴. 특정산업의 차이와 관련하여 예컨대, 소프트웨어 수익인식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함. 계약상 소프트웨어 요소의 차이에 대한 규정된 공정가치의 VSOE를 필요로 함. 이러한 요구는 US GAAP의 일반적인 공정가치 요건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임.	두 가지 주요 수익기준은 네 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한 가지에 해당되는 모든 수익거래에 대하여 규정함. - 상품의 판매 - 서비스의 제공 - 기업의 자산을 다른 이들이 사용(이자수익, 로열티 등) - 건설계약 이러한 카테고리의 각 수익인식에 대한 기준은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익과 비용이고, 실체에 해당하는 거래와 관련있는 경제적 이익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임. 추가적인 기준은 각각 넓은 카테고리에서 적용됨. 각 카테고리에 걸쳐 내포하고 있는 원칙은 일반적으로 중요한 향후 규정이나 예외없이 일반적으로 적용함. 공정가치의 VSOE의 개념은 IFRS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공정가치를 낮게 측정하게 되는 결과는 IFRS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회계처리의 한계점을 나타냄. 반면에 아이템이 분류되어 판매되었을 때 기업에 의해 정기적으로 청구된 가격이 아이템의 공정가치에 대한 적절한 증거라면 특정한 상황에서 IFRS에서는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측정으로 인식하게 되고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임.

(2) 일반적인 서비스의 판매

서비스 수익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에 의한 근본적인 차이는 수익인식의 시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표 1-2〉 일반적인 서비스의 판매

US GAAP	IFRS
US-GAAP은 건설 또는 특정한 생산유형의 계약에 대해서는 특정한 지침의 범위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계약 하의 수익인식에 대한 방법으로 원가대응진행 기준(cost-to-cost percentage-of completion method)의 사용을 금지함.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부분완성기준(the proportional-performance model) 또는 완성 기준(the completed-performance model)을 적용해야 함. 산출(output)에 대한 측정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투입(input)에 대한 측정방법을 사용하여 완성도에 대한 진행정도를 측정함. 수익은 구별할 수 있는 패턴에 기초해서 인식해야 되며, 구별할 수 있는 패턴이 없다면 균등인식법(the straight-line approach)을 적용할 수 있음. 수익은 서비스계약의 성과가 이연된다면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없음.	IFRS에서는 서비스 거래를 완성단계와 관련해서 측정 단계는 공사진행 기준(the percentage-of-completion method), 완성 단계는 원가대응법(the cost-to-cost method) 등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판단하게 됨. 만약 서비스가 완성정도를 반영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고, 지정된 기간동안 정확한 수치를 확인할 수 없는 완성도라면 균등인식법(a straight-line basis)으로 인식할 수 있음. 서비스 거래의 성과가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을 때 수익은 발생한 비용의 회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식함. 발생비용의 회수가금액 범위 내에서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zero-profit model)은 완성 기준(the completed-performance model)에 반대되는 개념임. 만약 거래의 성과가 발생한 비용이 회수가 불확실한 상황이라면 수익은 좀 더 정확한 측정이 가능할 때까지 이연하여 인식함. 수익은 다른 규정의 계정항목보다 좀 더 구체적인 때까지 이연하여 인식함.

(3) 서비스의 판매-환불

수익인식방법에 따른 차이는 서비스거래가 환불을 포함한 거래일 때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수익을 조기에 인식하게 된다.

〈표 1-3〉 서비스의 판매-환불

US GAAP	IFRS
환불에 대한 권리는 환불만료까지 서비스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인식에서 배제함. 특정한 상황에서 기업이 서비스기간 동안 수익을 인식할 수도 있음(지침을 충족하는 특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환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서비스 계약은 계약의 성과가 합리적으로 측정가능한지 여부와 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한 것과 관련한 경제적 이익을 받을 가능성의 여부에 따라 회계처리하게 됨. 합리적인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수익은 오직 발생비용의 회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식함.

(4) 건설계약

〈표 1-4〉 건설계약

US GAAP	IFRS
US-GAAP의 지침은 시설건축, 제품생산 또는 관련서비스의 제공 등에 대한 특정한 계약의 성과에 대한 회계처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일반적으로 특정한 산업과 유형의 계약에 한하여 적용함. 부분완성기준방법(the percentage of completion method)은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반면 완성기준방법(completed-contract method)은 합리적인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와 같은 특정한 상황에서 적용됨. 신뢰성 있는 측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계약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부분완성기준방법을 기본으로 한 발생비용의 회수가가능액 범위 내에서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zero-profit model)을 적용하는 것이 완성기준방법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욱 적합함. 이것은 더 정확한 측정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적용함. 부분완성기준방법은 수익접근방법(the revenue approach)과 총이익접근방법(the gross profit approach)의 두 가지 접근방법이 가능함. 복합적이고 부분적인 계약(combining and segmenting contracts)은 특정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허용되지만 거래의 경제성이 근본적으로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허용되지 않음.	궁극적인 목적 또는 사용이나 디자인, 기술 및 기능의 관점에서 독립적이고 연관성이 없는 복합자산 또는 단순자산의 건설의 수익에 대한 국제회계기준의 지침은 고정된 금액과 원가자산 건설계약방법을 통해 산출함. 계약이 건설계약 기준 또는 광범위한 수익기준의 범위 내인지의 여부에 따라 측정함. 건설회계처리 지침은 일반적으로 반복적으로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완성기준방법은 적용하지 못함. - 국제회계기준은 수익에 대해서 부분완성기준 방법을 적용함. 최종성과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힘든 경우 발생비용의 회수가가능액 범위 내에서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을 사용하되, 총이익방법(the gross profit approach)은 허용되지 않음. 복합적이고 부분적인 계약은 특정한 기준을 충족할 때 적용함.

나. 연방소득세법상 익금⁴¹⁾

미국에서도 세무조정이란 재무회계상의 순이익에서 출발해서 세무상 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세무조정은 재무회계상의 순이익을 세무상 과세표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M-1 서식을 이용하며 결손금 공제 및 배당소득공제는 포함되지 않는다. 과세대상 항목이지만 장부에 계상되지 않는 이익 및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되었지만 세무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비용은 M-1 서식의 가산항목에 포함된다. 장부상 이익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으나 세무상 과세소득인 경우, 즉 익금 산입의 세무조정이 필요한 항목으로는 선수임대료와 선수로얄티가 대표적이다. 여기서 선수임대료와 선수로얄티는 기간미경과분 임대료와 로얄티로서 장부상 수익으로 계상되지는 않지만 수령한 연도의 과세표준에는 포함되는 것이다.

2. 일 본

가. 일본 법인세법상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

일본 법인세법 제22조 제4항은 법인의 수익, 비용 등의 금액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법인소득의 계산이 원칙적으로 기업이익의 계산기술인 기업회계에 준거하여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처리의 기준이라 함은 미국 기업회계의 “일반적으로 승인된 회계원칙”에 상당하는 관념으로 일반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회계처리의 기준을 의미한다. 과세소득을 산출하기 위한 익금 및 손금의 계산에 대하여 법인

41) 이번 절은 김영수(2010)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이다.

세법 및 조세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조세정책상의 이유에서 다수의 별도로 정한 것이 있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처리의 기준이 대폭 수정을 받게 된다. 세법상 익금 및 손금에 관한 규정은 이 점에서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처리의 기준을 확 인하는 성질의 것이다. 예컨대, 자산의 평가이익의 익금불산입 규정(제 25조),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규정(제33조), 임원상여의 손금불 산입 규정(제35조 제1항), 법인세의 손금불산입 규정(제38조 제1항) 등 은 여기에 해당하는 규정이다.

둘째,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회계처리의 기준을 전 제로 하면서도 획일적 처리의 필요에서 통일적인 기준을 설정하거나 또 는 일정한 한도를 두고 때로는 이를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이다. 재고자산의 평가에 관한 규정(제29조), 감가상각에 관한 규정(제31조), 충당금에 관한 규정(제52조 이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셋째, 조세정책상 또는 경제정책상의 이유에서 일반적으로 공정·타 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처리의 기준에 대하여 예외를 정한 규정이다. 예 컨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제23조), 접대비의 손금 불산입에 관한 규정(제61조의4)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일본세법에서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익금이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 하에서 세법에서 조정을 하는 부 분을 가감한 항목을 의미하며 가감을 어떻게 하는가는 조세정책의 목적 이 담겨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수익과 비용의 귀속연도

법인의 수익, 비용, 손실 등을 어떠한 연도에 계상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두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으나 일본의

회계원칙에는 발생주의에 의하여 손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법인세법은 이 점에 대하여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소득의 발생시점을 소득세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실현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재화의 이전이나 역무의 제공 등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된 때에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일본 법인세법에서도 원칙적으로 권리확정주의를 주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 법인세법은 다음의 경우에 대하여 권리확정주의의 예외를 정하고 있다.

첫째, 장기할부판매 자산, 장기 대규모 공사 등의 장기판매와 장기용역을 그 대상으로 하는데, 2년 이상에 걸친 장기할부판매 등에 해당하는 자산의 판매 등이다. 이 경우 권리확정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자산의 판매, 양도, 공사의 완성, 인도 또는 역무의 제공이 되는 때에 수익 및 비용이 발생할 것이지만 대금의 회수가 장기간에 걸치고 또한 분할해서 수령하기 때문에 납세자금이 부족한 것을 고려하여 계약상 지불금의 지급 기일이 되는 날을 포함한 사업연도에 수익 및 비용을 계상하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이것은 권리확정주의의 예외이기 때문에 수익 및 비용에 대하여 확정된 결산에 있어 연불기준으로 경리를 하는 것이 조건으로 되어 있다. 장기대규모공사(착수한 날부터 인도의 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으로 대가금액이 50억엔 이상의 것)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것의 도급에 대하여는 공사진행기준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는 권리확정주의를 적용하면 공사의 완성·인도시에 수익 및 비용이 발생할 것이나 법인의 활동과 소득상황의 적정한 파악을 위하여 공사의 진행에 따라 수익 및 비용을 예상하여 계상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둘째, 자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이다. 자산의 평가익과 평가손은 과거에는 원칙적으로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 기업회계에서 시가회계 및 미실현손익을 계상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고 기업회계심의회의 2000년 1월 22일자

“금융상품에 관련한 회계기준의 설정에 관한 의견서”도 매매목적 유가증권, 파생상품 등의 기말평가에 대하여 시가주의를 행하고 그 결과를 손익에 계상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또한, 세무회계에서도 파생상품 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것도 한 이유로 되어 일정 범위 내의 시가주의가 도입되었고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① 단기매매상품(단기적인 가격의 변동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유가증권 제외))의 시가법에 의한 사업연도말의 평가익 또는 평가손의 금액은 당해 연도의 익금액 또는 손금액에 산입한다.
- ② 단기매매상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단기가격변동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매매상품의 매매업무의 전부를 폐지한 경우에는 그 때에 단기매매상품을 그 때의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당해연도의 소득을 계산한다.
- ③ 매매목적 유가증권은 시가에 의하여 사업연도 말에 평가를 하고 평가익 또는 평가손의 금액을 당해연도의 익금액 또는 손금액에 산입한다.
- ④ 매매목적 유가증권 중 상환기간 및 상환금액이 정하여진 것(상환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장부가액과 상환금액과의 차액(조정차익 및 조정차손)을 그 취득시부터 상환시까지의 기간에 배분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 ⑤ 유가증권의 공매, 신용거래 등으로 사업연도 종료일에 결제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결제된 것으로 보아 산출한 이익 또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액 또는 손금액에 산입한다. 또한, 신용거래로 매입을 하는 계약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시의 유가증권의 가액과 계약에 의하여 대가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은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액 또는 손금액에 산입한다.
- ⑥ 법인이 행한 파생상품거래 중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결제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결제한 것으로 보아 산출한 이익 또는 손실의 금

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액 또는 손금액에 산입한다. 또한, 파생상품 거래에 있어 금전 이외의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때의 자산의 가액과 대가로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은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액 또는 손금액에 산입한다.

- ⑦ 법인이 자산가격의 변동 등에 의하여 발생할 우려가 있는 손실액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파생상품 거래 등을 한 경우 그 파생상품 거래 등이 헤지대상 자산 등의 손실액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파생상품 거래 등에 관한 이익 또는 손실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액 또는 손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헤지 거래 대상의 손익의 계상시기로 이연한다.

제3장 제도 간의 비교 및 분석

제1절 회계기준 간의 비교 및 분석

전술한 K-IFRS, IFRS for SME 및 ED를 항목별로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단, IFRS-SME는 K-IFRS와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K-IFRS와 ED 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분석하기로 하고, 추가적으로 이제까지 계속적으로 적용했던 K-GAAP과 K-IFRS와의 분석을 추가하였다.

1. K-GAAP과 K-IFRS의 수익 인식의 비교⁴²⁾

가. 적용배제 항목의 추가

과거 K-GAAP 제4호에서는 농산물, 임산물 및 가축의 “자연적 가치 증가”에 대해서만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에서는 생물자산과 수확물의 “최초인식”도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어로업이나 벌목업 등의 수익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를 적용한다. 참고로 양식어업이나 영림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나. 거래의 주목적을 식별하기 위한 기준

과거 K-GAAP 제4호에서는 거래의 식별에 대한 원칙과 함께 재화와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거래의 주목적을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사례와 함께 제시하고 있지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에서는 거래의 식별에 대한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다.

42) 한국공인회계사회(2008)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이다.

다. 수익인식 조건인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에 대한 판단 기준

과거 K-GAAP 제4호에서는 수익인식 조건의 하나인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매우 높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에서는 “높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라. 용역제공거래 전체에서 손실이 나는 경우의 회계처리

과거 K-GAAP 제4호에서는 총원가의 합계액이 총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과 이미 인식한 이익의 합계액을 전액 당기손실로 인식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에는 이러한 명문 규정이 없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의 문단 36에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와 동일한 규정이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의 문단 21에 따라 이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마. 주요 수익항목에 대한 공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에서는 “주요 수익항목별 금액”과 “주요 수익항목별 금액 중 교환으로 발생한 수익금액”의 공시를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K-GAAP 제4호에서는 이러한 공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바. 지분증권 취득 전 순이익에서 결의된 배당금의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에서는 지분증권의 취득 전 순이익과 관련하여 결의된 배당금은 지분증권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고, 임의적 기준

을 적용하지 않고 지분증권의 취득 전 순이익에서 결의된 배당금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배당금이 지분증권취득원가의 일부 회수라는 사실이 명백하지 않은 한 수익으로 인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K-GAAP 제4호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2. K-IFRS 및 IFRS for SME와 ED의 비교 및 분석⁴³⁾

가. 재화와 용역 이전으로부터의 수익인식

〈표 1-1〉과 같이 ED에서는 자산개발계약(예 : 건설, 제조, customized software)은 자산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고객이 해당 자산을 통제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속적(continuous)으로 수익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IFRS에서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던 일부 계약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진행기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나. 각각의 이행의무의 식별

〈표 1-2〉의 비교와 같이 현행 IFRS와 ED에서는 공통적으로 구별 재화와 용역에 대한 별도의 이행의무로 계약을 분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무상 통상 식별하는 회계단위와 다른 회계단위로 계약을 분할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43)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2010)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표 2-1〉 재화나 용역 이전으로부터의 수익인식

현행 IFRS	ED
〈K-IFRS 제1018호 수익 문단 14〉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함. (1)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됨. (2) 판매자는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지속적인 관리상 관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도 아니함. (3)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음. (4)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음. (5)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음.	〈문단 32, 33〉 별도(separate) 이행의무의 기초가 되는(underlying) 약정 재화나 용역이 고객에게 계속적으로(continuously) 이전될 때 기업은 고객으로의 재화나 용역 이전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하나의 수익 인식방법을 그 이행의무에 적용함.
〈K-IFRS 제1018호 수익 문단 20〉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제공거래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보고기간 말에 그 거래의 진행률을 따라 인식함.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용역제공거래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음. (1)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음. (2)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음. (3) 보고기간 말에 그 거래의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음. (4)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한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음.	〈문단25〉 고객이 재화나 용역의 통제를 확보할 때 재화나 용역이 이전됨.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부동산건설약정의 회계처리 (1) 약정이 건설계약인 경우 제1011호 적용범위에 속하면 제1011호에 따라 계약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 (2) 용역제공약정인 경우 제1018호는 동 기준서 문단 20의 기준이 충족되면 진행기준을 사용하여 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 (3) 약정이 재화판매약정인 경우 (가) 건설재료와 더불어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면 그 약정은 재화판매약정에 제1018호 수익 문단 14에 따라 수익을 인식 (나) 제1018호 문단 14의 모든 기준이 건설진행 중에 계속적으로 충족된다면 기업은 진행기준을 사용하여 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	〈문단30〉 재화나 용역의 통제를 이전하였는지 평가를 해야 함. 다음과 같은 지표를 고려해야함(각각 지표가 될 수 있음). (1) 고객이 지불해야할 무조건적인 의무를 가짐. (2) 고객이 법적 소유권을 가짐. (3) 고객이 물리적인 보유를 함. (4) 재화와 용역의 디자인이나 기능이 고객에게 특정(customer-specific) 됨.

〈표 2-2〉 각각의 의무이행의 식별

현행 IFRS	ED
〈K-IFRS 제1011호 건설계약 문단 8〉 어느 한 계약이 복수 자산을 포함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 할 때에는 각 자산의 건설을 별개의 건설계약으로 봄. (1) 각 자산에 대하여 별개의 공사제안서가 제출됨. (2) 각 자산에 대하여 개별적 협상이 이루어졌으며, 건설사업자와 발주자는 각 자산별로 각 자산과 관련되는 계약 조건을 수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음. (3) 각 자산별로 원가와 수익의 식별이 가능함.	〈문단 13〉 한 계약의 재화나 용역 대가금액이 다른 계약의 재화나 용역 대가에 달려있다면(다른 말로, 계약의 가격이 상호의존적임.) 둘 또는 그 이상의 계약을 결합하고 그들은 단일 계약으로 회계처리(account for)하여야 함.
	〈문단 20〉 각 약정 재화나 용역을 식별하고, 별도의 이행의무로 회계처리 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계약의 조건과 영업실무를 고려해야 함.
	〈문단 22〉 하나 이상의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약정을 한다면, 기업은 구별될 경우에만 별도의 이행의무로써 약정 재화나 용역을 회계처리함.
	〈문단 23〉 재화나 용역, 또는 재화나 용역의 묶음(bundle)은 다음의 경우에 구별됨. (1) 기업 또는 다른 기업이 동일한(identical) 또는 유사한 재화나 용역을 별도로(separately) 판매함. (2) 기업은 재화나 용역이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기 때문에 재화나 용역을 별도로 판매할 수 있음. ① 구별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 ② 구별되는 이윤(profit margin)을 가지고 있음.

다. 라이선싱과 사용권

〈표 1-3〉의 비교와 같이 ED에서는 기업은 지적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가 배타적인 기준에서 부여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해야 한다. 만약 배타적인 기준에서 라이선스가 부여된다면 기업은 라이선스의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해야 하지만, 비배타적이라면 고객이 권리를 사용하고 효익을 얻을 수 있는 시점에서 기간에 무관하게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

〈표 2-3〉 라이선싱과 사용권

현행 IFRS	ED
명시적인 규정은 발견하지 못함	〈문단 B33-B38〉 라이선스가 배타적이라면 지적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고, 비배타적이라면 권리를 사용하고 효익을 얻을 수 있을 “때” 수익을 인식함.

라. 신용위험의 효과

〈표 1-4〉의 비교와 같이 ED에서는 고객의 신용위험이 기업의 수익인식 여부가 아닌 수익인식금액의 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표 2-4〉 신용위험의 효과

현행 IFRS	ED
〈제1018호 수익 문단 14〉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함. ⋮ (4)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음. ⋮ 〈제1018호 수익 문단 20〉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제공거래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보고기간 말에 그 거래의 진행률에 따라 인식함.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용역제공거래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음. ⋮ (2)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 ⋮	〈문단 8-33, 문단 43〉 수익에 인식문단에서 신용위험(예: 회수가능성)에 대한 언급되어 있는 부분은 없으며, 측정문단에만 기술되어 있음.

마. 추정치 사용

거래가격이란 수익인식에 반영할 대가의 발생가능성-가중평균금액이므로(문단33) 이를 결정하고(예: 변동대가를 추정할 때) 독립판매가격 기준에 따라 거래가격을 배분하는 데 있어 추정이 필요하다. 그 밖에도 독립판매가격을 추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즉, 현행 기준보다 추정 방법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바. 원가의 계상

계약원가(contract costs) 중 발생하였을 때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할 부분과 자산화시켜야 하는 부분을 명시하고 있다. 즉, 과거 자산화하였던 원가가 ED에 따르면 비용화 될 수 있는 것이다(예: 계약획득원가).

〈표 2-5〉 원가의 계상

현행 IFRS	ED
계약원가는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의 최종완료일까지의 기간에 당해 계약에 귀속될 수 있는 원가를 포함함. 그러나 계약에 직접 관련되며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계약체결 전에 발생한 원가는 개별적으로 식별이 가능하며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계약의 체결가능성이 높은 경우 계약원가의 일부로 포함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를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이 후속기간에 체결되더라도 계약원가에 포함하지 않음(제1011호 건설계약 문단 21).	판매원가, 마케팅원가, 광고 및 입찰, 제안, 교섭원가 등과 같은 계약획득원가는 비용으로 인식함(문단 59, BC156-BC158).

사. 그 밖의 수익에 미치는 영향

현행 IFRS는 보증의무(예: 하자보수의무)에 대해 IAS 37에 따라 예상 발생원가로 부채의 인식을 요구한다(수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 이에 반해 ED는 보증의무가 별도의 이행의무라면 당해 의무에 거래대가(원가가 아닌 판매가)를 배분하여 수익에서 차감하고 추후 보증의무 이행시 수익을 인식한다(문단 B13-B19).

아. 공시

ED는 재무제표 이용자가 금액, 시기, 수익의 불확실성, 고객과의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현금흐름의 이해를 도울 수 있게 명시하였고, 현행 기준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고객과의 계약에 대한 더 많은 정보의 공시를 요구한다.

〈표 2-6〉 공시

현행 IFRS	ED
다음 사항을 공시함(제1018호 수익 문단 35). (1) 수익을 인식하기 위하여 채택한 회계정책(용역 제공 거래의 진행률을 결정하기 위하여 채택한 방법을 포함) (2) 다음의 수익항목을 포함하여 당해 회계기간에 인식한 주요 수익항목별 금액 (가) 재화의 판매금액 (나) 용역의 제공금액 (다) 이자수익 (라) 로열티수익 (마) 배당수익 (3) 주요 수익항목별 금액 중 재화나 용역의 교환으로 발생한 수익금액	수익의 범주, 이행의무의 성격, 금액, 시기, 판단사항 등 광범위한 공시사항을 요구하고 있음(문단 69-83).
다음의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제1011호 건설계약 문단 39). (1) 당기에 수익으로 인식한 계약수익금액 (2) 당기에 인식한 계약수익의 결정방법 (3) 계약 진행률의 결정방법	
보고기간 말 현재 진행 중인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제1011호 건설계약 문단 40). (1) 누적발생원가와 누적손익의 합계액 (2) 선수금 (3) 회수보류액	
(참조: 제1018호 수익 문단 35-36, 제1011호 건설계약 문단 39-45)	(참조: Question 10 ED의 내용)

제2절 회계기준과 세법 간의 비교 및 분석-법인세법상 세무조정을 중심으로

이번 절에서는 법인세법을 중심으로 세법을 과거 K-GAAP와 비교한 후에 K-GAAP에서 K-IFRS로 변경된 이후의 추가적인 세무조정사항도 분석하기로 한다. 이를 통해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괴리를 인식함으로써 장래의 개선방안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1. 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비교-수익의 범위

가. 회계상 이익과 과세소득의 개념상 차이

앞서 분석한 회계상 수익의 개념, 범위와 인식기준을 요약하면 <표 2-7>과 같은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7〉 회계상 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구분	회계상 이익(기업회계기준)	과세소득(법인세법)
소득의 개념	손익거래와 자본거래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으로 순이익을 계산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손익거래와 자본거래를 구분하지 않고 과세소득을 계산(예: 자기주식처분 이익)
손익의 인식기준	발생주의	권리의무확정주의
정책적 목적	다양한 회계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	조세정책적인 목적으로 과세해택이나 불이익을 규정(예: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접대비한도 초과 손금불산입)

구체적으로 법인세법상 익금이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익금불산입항목을 제외함으로써 기업회계상의 수익보다는 넓은 개념인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세법에서는 포괄주의 과세방법(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는 예시규정이다)을 통해 익금을 규정한다고 할 수 있다.

$$\text{익금} = \text{일반적인 익금항목(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 \text{특수한 익금항목 (간주익금, 그 밖의 조항)}$$

나. 익금항목에 대한 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구체적인 차이점

(1) 자기주식처분이익

자기주식처분손익 및 자기주식소각손익과 관련하여 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차이를 정리하면 <표 2-8>과 같다.

<표 2-8> 자기주식 관련 회계기준과 세법의 차이

구분	기업회계기준	법인세법
자기주식처분이익	자본잉여금(기타 자본잉여금)	익금
자기주식처분손실	자본조정	손금
자기주식소각이익(감자차익)	자본잉여금(기타 자본잉여금)	익금불산입
자기주식소각손실(감자차손)	자본조정	손금불산입

(2) 자산의 평가차익

<표 2-9>와 같이 법인세법에서는 자산의 평가차익을 원칙적으로 익금불산입하고 예외적으로 익금으로 인정한다.

〈표 2-9〉 평가차익 관련 익금

구 분	평가차익의 익금여부	평가차익의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포함 여부
일반원칙(법에 의하지 않은 임의평가 차익)	익금불산입 ⁴⁴⁾⁴⁵⁾	취득가액 익금불산입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 의 ⁴⁶⁾ 평가차익 ⁴⁷⁾	익금	취득가액 산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 른 투자회사들이 보유한 유가증권 등의 평가차익		
금융기관이 보유한 외화자산의 ⁴⁸⁾⁴⁹⁾ 환 율변동으로 인한 평가차익		

유가증권의 평가는 이익계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의 적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은⁵⁰⁾ 법인세법에 따르면 모두 부인한다. 원가법 중에서 법인이 신고한 방법(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만으로 평가한다.

44)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까지 자산재평가가 이루어진 자산의 재평가차액은 자본잉여금 중에서 재평가적립금으로 회계처리하고 법인세법상 익금에도 산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평가세율이 1%인 토지(1984년 이후에 취득한 토지 또는 1983년 이전에 취득한 후 1984년 이후에 두 번 이상 재평가하는 경우(최초의 재평가가 아닌 경우))는 높은 법인세를 부담시키기 위해 재평가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였다.

45)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를 방지하고 기업회계기준과 일치하기 위한 취지이다.

46) 유형자산과 무형자산(기업회계기준의 비유동자산 중 투자자산과 기타비유동자산은 불포함).

47) 업종별 회계처리를 수용하기 위한 취지이다.

48) 통화관련파생상품 중 통화선도와 통화스왑 포함.

49)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로 평가.

50) 기업회계기준은 유가증권을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및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한 후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영업외 수익)을 인식한다.

〈표 2-10〉 유가증권의 세무상 평가방법

구분	평가방법(원가법)
채권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주식 등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그러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가 보유한 집합투자재산의 유가증권 평가차익은 익금(시가법에 따라 평가)⁵¹⁾ 인식한다.

(3) 손금에 산입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손금에 산입된 금액 중 환입된 금액은 기업회계상 수익이나 세무상으로는 〈표 2-11〉의 구분에 따라 구별하여 익금으로 인식한다.

〈표 2-11〉 손금에 산입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당기전 비용 계상시(또는 지출시)	당기 환입시(또는 환급시)
손금으로 인정된 경우	익금
손금불산입된 경우	익금불산입

(4) 간접납부외국법인세액

국제적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편의상 익금항목에 포함하지만, 회계상으로는 별개의 자회사의 회계처리이므로 수익에 포함하지 않는다.

51) 그 밖에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변액보험특별계정에 귀속하는 자산은 원가법과 시가법 중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그 방법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한다.

(5)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저가매입한 유가증권의 매입가액
과 시가와의 차액⁵²⁾

익금으로 보는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므로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시가로 보고 기업회계상 수익에 포함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저가매입은 정상거래로 보기 때문에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익금 불산입한다.

(6)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간주임대료)은 조세정책상 목적(임대료를 받는 경우와 임대보증금 등을 받는 경우 사이의 과세형평의 문제)으로 익금에는 해당하지만, 기업회계상 수익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상의 내용은 익금에 해당하는 항목과의 차이이고, 이하의 내용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을 세법이 별도로 규정한 것들이다.

(7)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및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및 이전차익은 주식발행초과금과 같은 취지로 출자의 일부이므로 익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기업회계상 수익에는 포함된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 자본증가의 한도액 -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액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 자본증가의 한도액 - 완전모회사의 자본액

52)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인 개인이 당해 법인에게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성격이 당해 법인의 주주들에게 그 차액만큼 간접적으로 증여한 것과 같다. 따라서, 법인세법에서는 이를 규제하기 위해 동 차액만큼을 당해 법인의 익금으로 보아 매입시점에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8) 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이익 중 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금액

특정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의 출자전환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에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되지 않은 금액 중 이후 사업연도의 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금액이다. 이것은 과세이연효과를 얻기 위한 익금불산입 항목이지만, 기업회계상으로는 수익에 포함한다.

$$\text{채무면제이익} = \text{출자전환한 채무액} - \max(\text{해당주식의 시가, 액면가})$$

(9) 법인세 또는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환급액

손금불산입된 금액의 환급액이므로 익금불산입 항목이지만 기업회계상 수익에는 포함한다.

(10)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법인단계와 주주단계의 이중과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익금불산입 항목이지만 기업회계상 수익에는 포함한다.

다. 회계기준과 소득세법의 비교

회계기준과 법인세법 간의 이상의 비교와 함께 이번 절에서는 회계기준을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과 비교하기로 한다.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소득을 다양하게 구분한 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반면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에 따른 포괄주의 과세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하지 않는 반면 (일반적인 상장주식 또는 채권의 양도차익 등)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들 소득이 대부분 수익항목에 포함된다.

법인세와 유사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은 계속적·정상적 발생분에 국한하는 반면 (고정자산처분이익, 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 밖의 기타, 퇴직 및 양도소득은 불규칙적·일시적 발생분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회계상 수익에 포함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예외적으로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1)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의 처리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은 <표 2-12>와 같이 회계기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간에 차이가 있다.

<표 2-12> 자산수증이익·채무면제이익의 처리방법

구 분	처리방법
회계기준	특별이익
법인세법	① 일반원칙: 익금 ② 세법상 이월결손금(발생연도에는 제한이 없고 ⁵³⁾ 합병·분할시 승계받은 결손금을 제외함)의 보전에 충당하는 ⁵⁴⁾ 경우에는 익금아님 ⁵⁵⁾
소득세법	①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②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경우: 총수입금액 (단, 세법상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⁵⁶⁾ 경우에는 총수입금액 불산입)

<표 2-12>에서 사업과 관련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자산수증이익이나 채무면제이익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 중에서 개인적공급이나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는데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의 세법상 처리는 <표 2-13>과 같다.

53)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제한이 경과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하는 자산수증이익 등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결손보전을 촉진함으로써 자본충실을 기하기 위한 목적이다.

54)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적으로 공제.

55) 과세표준 신고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법원 등이 확인한 결손금 중 세무상 결손금에 보전하는 자산수증이익 등도 이월결손금으로 인정한다.

56)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적으로 공제.

〈표 2-13〉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의 세법상 처리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자가공급	익금 불산입 ⁵⁷⁾	총수입금액 불산입
개인적공급		총수입금액 산입
사업상증여		
폐업시의 잔존재화		총수입금액 불산입

(2) 간주임대료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 규정에도 차이가 있다. 즉, 간주임대료는 회계상 수익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조세정책상 목적으로 수익으로 인식하는 예외적인 항목에 해당한다.

〈표 2-14〉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간주임대료 비교

구 분	법인세법		소득세법
	추계결정	추계결정 외	
적용대상자	제한 없음	차입금 과다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내국법인	제한 없음
임대보증금 등	제한 없음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는 ⁵⁸⁾ 제외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는 제외 ⁵⁹⁾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	차감 없음	차감	법인세법과 동일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금융수익	차감 없음	차감	법인세법과 동일 ⁶⁰⁾

57)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

58) 주택부수토지의 한계면적 = MAX(건물정착면적×5(10)배, 주택의 연면적).

59) 다만, 거주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同) 임대보증금 등도 간주임대료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60) 단, 법인은 금융수익에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 외에 신주인수권처분익과 유가증권처분익도 포함된다.

(3) 손해배상금

손해배상금은 기업회계상 수익에 해당하지만 세법상으로는 개별세법에 따라 <표 2-15>와 같이 처리한다.

<표 2-15> 손해배상금의 개별세법별 처리방법

구 분	손해배상금의 개별세법별 처리방법
법인세법	익금
소득세법	①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해약금 : 기타소득으로 과세 ② 기타의 배상금(교통사고배상금·명예훼손배상금 등) : 과세대상 소득 아님
부가가치세법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①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② 도급공사 및 납부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③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④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4) 의제배당

의제배당은 비록 실질적인 배당은 아니지만 경제적 실질이 법인의 소득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배당으로 의제하는 것인데 그 처리는 <표 2-1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16> 주주입장에서 투자한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처리방법

구 분	기업회계기준	법인세법	소득세법(법인세법과 동일)
현금배당	배당금수익(영업외수익)	익금	배당소득
의제배당	수익 아님	익금	배당소득

라.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소득과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의 비교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소득의 범위 및 과세방법을 비교하면 <표 2-17>와 같다.

<표 2-17>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과세소득의 범위 및 과세방법의 비교

구 분	법인세법	소득세법
작물재배업 소득	각사업연도소득 포함	사업소득 불포함
이자·배당수익	각사업연도소득 포함	사업소득 불포함
대손충당금	대여금도 설정가능	대여금은 설정불가 ⁶¹⁾
	금융회사 등의 대손율은 MAX(2%, 대손실적률)	업종에 관계없이 대손율은 MAX(1%, 대손실적률)
결손금 공제	없음	있음
이월결손금 공제	있음	있음(타소득에서도 공제가능)
유가증권·고정자산처분손익	익금·손금산입	총수입금액·필요경비불산입
고정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원칙	예외없이 총수입금액불산입
기중신규취득자산의 상각범위액	월할계산월할계산	
기중양도자산의 상각범위액	별도 계산하지 않음	월할계산
양도자산의 상각부인액	손금산입(△유보)	세무조정 없이 유보금액 소멸
시설개체 등으로 인한 생산설비 폐기손실	폐기시 (장부가액—1,000원) 손금산입가능	처분시 (장부가액—처분가액) 필요경비산입가능

또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상 출자자에 대한 이익분배절차는 <표 2-18>과 같은 차이가 있다.

61) 금융업은 설정가능.

〈표 2-18〉 출자자에 대한 이익분배절차의 차이

구 분	법인세법	소득세법
사외유출분 소득처분	소득처분 및 귀속자의 소득세 납세의무	별도의 소득처분 없이 귀속자의 증여세 납세의무
사내유보분 소득처분	유보 소득처분 및 관리	유보 소득처분 및 관리
대표자·사업주분 상여	손금산입	필요경비불산입
대표자·사업주분 퇴직급여충당금	설정가능	설정불가
재고자산 등의 자가소비	익금불산입	총수입금액산입
가사관련경비	출자임원 등에게 지출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예외없이 필요경비 불산입

2. 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비교-수익의 귀속시기

가. 권리의무확정주의

법인의 사업연도별 과세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데 법인세법에서는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하고 있다(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권리의무확정주의는 회계담당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은 발생주의에 비해 법률적 측면을 강조하여 권리와 의무의 귀속시기를 결정하는 것이다.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기업회계의 기준⁶²⁾ 또는 관행에 따른다.⁶³⁾

62) 국제회계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63) 법인세법 제43조.

나. 구체적인 손익의 귀속시기

(1) 일반원칙

법인세법상 일반적인 손익의 귀속시기는 <표 2-19>와 같다.

<표 2-19> 손익의 귀속시기

구분	법인세법	회계기준 ⁶⁴⁾
재고자산(부동산 제외)의 판매	인도한 날	좌동
재고자산의 시용판매	상대방이 구입의사표시를 한 날 ⁶⁵⁾	좌동
재고자산 외의 자산(투자자산, 유형자산 등)의 양도	대금청산일 · 소유권이전등기일 (등록일) ·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	좌동
자산의 위탁판매	수탁자가 그 위탁재산을 판매하는 날	좌동

매출할인은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그 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⁶⁶⁾

(2) 장기할부의 특례와 용역제공 등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이것은 K-IFRS의 도입에 따라 2010년말의 세법개정에서 반영되었는데 아래에서 별도로 설명하기로 한다.

(3) 이자수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

64) 과거 K-GAAP에서는 동(同) 항목의 손익귀속시기가 명확하게 구분되었으나 현행 K-IFRS에서는 원칙적으로만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동(同) 항목에 대한 법인세법과 K-IFRS 간의 구체적인 차이점은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65) 다만, 일정기간 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66) 기업회계기준에는 별도의 기준이 없지만 실무상으로는 본문의 방법(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4항)을 대부분 적용한다.

일반법인의 경우 이자수익의 발생주의 수용특례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미수이자와 다르게 미지급이자는 그 이자가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결산서에 계상하면 이를 손금으로 인정한다. 구체적으로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를 정리하면 <표 2-20>과 같다.

〈표 2-20〉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

구분		법인세법	회계기준 ⁶⁷⁾
이자 수익	일반법인	① 원차: 실제로 지급받은 날 ⁶⁸⁾ 또는 약정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날 ⁶⁹⁾ (소득세법상의 이자소득의 수입 시기 ⁷⁰⁾ 준용) ② 특례 - 기간경과분 이자수익(미수이자) 인식시 인정 (단, 법인세가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은 미수이자를 계상하는 경우에도 불인정) ⁷¹⁾⁷²⁾	발생주의(기간경과분 이자수익(미수이자) 인식)
	금융보험 업을 영위하는 법인	① 원차: 실제로 지급받은 날 (선수수익은 제외) ② 특례 - 기간경과분 이자수익(미수이자) 인식시 인정 (단, 법인세가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은 미수이자를 계상하는 경우에도 불인정) ⁷³⁾	상동
이자비용		① 원차: 실제로 지급한 날 또는 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날 ② 특례 - 기간경과분 이자비용(미지급이자) 인식시 인정	발생주의(기간경과분 이자비용(미지급이자) 인식)

67) 과거 K-GAAP에서는 동 항목의 손익귀속시기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으나 현재 K-IFRS에서는 원칙적으로만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동 항목에 대한 차이는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68) 일반적인 예금이자의 경우.

69) 비영업대금이익의 경우.

70) “실제로 지급받은 날” 외에 예외적으로 원본전입 특약이 있는 이자는 원본전입일,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해약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71) 일반법인이 받는 대부분의 이자는 법인세가 원천징수되므로 회사가 미수이자를 계상했더라도 소득세법상 귀속시기(실제로 지급받은 날 등)가 도래하기 전에는 이를 불인정.

72) 법인의 원천징수 편의를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주의를 배제하고 원천징수시기와 귀속시기(현금주의)를 일치시킨 것이다.

73) “법인세가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은 금융회사 등에게 지급되는 채권 등의 이자(할인액 및 집합투자기금으로부터의 이익 포함)만 포함하고 그 외의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은 제외한다.

②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

일반적인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은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로 실제로 지급받은 날과는 차이가 있다.

③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보험료 등의⁷⁴⁾ 귀속사업연도

원칙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로 하고(선수수익은 제외) 특례로 기간경과분 이자수익(미수이자)의 인식은 인정하고 있다.

(4)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임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임대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과 회계기준 간에 <표 2-21>과 같은 차이가 있다.

<표 2-21> 임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	회계기준
① 원차: 계약 등에 의한 지급일 ⁷⁵⁾ 또는 지급을 받은 날 ⁷⁶⁾ ② 특례 - 기간경과분 임대수익(미수임대료) 계상시 인정 -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경과분을 임대수익으로 인식 (발생주의 강제) ⁷⁷⁾	발생주의(기간경과분 임대수익(미수임대료) 인식)

② 금전등록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귀속사업연도

소매업 등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일부 업종의 경우 현금주의가 가능하다.

74) 보험료·부금·보증료 또는 수수료.

75)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

76)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77) 기업회계기준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③ 사채할인발행차금의 귀속사업연도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유효이자율법으로 계산한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⁷⁸⁾

④ 기타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⁷⁹⁾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비교-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하여 2010년말의 세법개정에 일부 반영되었지만 아직도 법인세법과 회계기준 간에 <표 2-22>과 같은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표 2-22>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구분	법인세법	회계기준
상환손익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	외환차손익(영업외손익)
평가손익	평가손익 인식대상 외화자산·부채의 범위 - 은행: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 - 비은행: 화폐상 외화자산 및 부채,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통화선도 및 스왑 외화자산의 평가방법 - 은행: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평가, 통화선도 및 스왑은 선택 - 비은행: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나 헷지목적 통화선도 및 스왑은 평가 선택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외화환산손익(당기손익)

78) 회사채 취득자는 현금주의에 따라 이자수익을 익금에 산입한다.

79)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5조(리스료 등의 귀속사업연도).

금융회사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통화스왑은 ① 거래일 환율 평가방법⁸⁰⁾, ② 마감환율 평가방법⁸¹⁾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② 마감환율 평가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① 거래일 환율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법인이 ① 또는 ②의 평가방법 중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동 조 제3항).

이와 같이 법인세법에서는 마감환율의 평가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평가손익이 익금 또는 손금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점은 기업회계에서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반드시 매 보고기간 말에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동(同) 환율이 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재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익은 발생하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과거에는 금융회사 외의 법인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평가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기업회계와의 조화를 위하여 마감환율 평가방법을 신고한 경우 금융회사 외의 법인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평가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게 한 것인데, 동(同) 규정은 201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 외의 법인이 마감환율 평가방법을 최초로 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 이전에 취득한(통화선도·통화스왑의 경우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및 통화선도·통화스왑에 대하여 마감환율 평가방법을 최초로 적용할 때 환산 전 원화기장액은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 전일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80)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통화스왑의 계약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취득일 또는 발생일(통화선도·통화스왑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이하 “매매기준율 등”)로 평가하는 방법.

81)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통화스왑의 계약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은 아래의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①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을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 ② 통화선도와 통화스왑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 다만, 최초로 ①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에는 ①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을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 ㉡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을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4.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의 개정

이상에서 설명한 K-GAAP와 법인세법 간의 비교와 함께 2011년부터 강제로 시행되는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표 2-23>과 같이 2010년 말에 법인세법이 개정되었다.

<표 2-23>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의 개정

- 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회계기준으로 포함
- K-IFRS 도입기업 유·무형자산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허용
-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변경신고 사유 추가
-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 및 중고자산 신고 내용연수 산정방법 개정
- 기능통화 도입기업 과세표준 계산방법 신설
-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신설
- 외화자산·부채 평가손익 인식 방법 개정
-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 신고조정 허용
- 저축성보험료 책임준비금 적립한도 개정
- 건설자금이자 자본화에 일반차입금 이자 포함
- 중소기업 장기할부거래 회수기준 신고조정 허용
- 건설계약 수익인식 방법 개정
- 법인세법상 리스분류 기준 개정
- K-IFRS 도입기업 등의 과세표준 신고시 재무제표 제출방법 명확화
- 현행 예규로 운영되고 있는 규정 법령화
- 단기매매증권 및 파생상품의 취득부대비용 귀속시기 변경

〈표 2-23〉 중에서 본 연구와 주제와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항목들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가. 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회계기준으로 포함⁸²⁾

K-GAAP이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대체되는 점을 감안하여 2010년 12월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은 회계상 수익을 정의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나.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손익의 인식방법 개정⁸³⁾

은행 외의 기업에게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헷지거래로 실질소득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세 부담이 발생하는(회계상 헷지대상자산의 평가손익과 헷지거래손익이 상계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평가손익이 부인되고 거래손익만 인식되어 법인세 부담이 발생함)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비은행의 경우에는 평가손익의 인식대상인 외화자산·부채의 범위를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함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통화선도·스왑으로 규정하였다. 은행의 경우에는 국제회계기준을 반영하여 평가손익의 인식대상을 모든 외화자산·부채에서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로 한정하였다.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이상의 개정사항을 정리하면 〈표 2-24〉와 같다.

82)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83)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및 제76조.

〈표 2-24〉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방법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통화선도·스왑
은행(택일)	평가	평가하지 않음
	평가	평가
비은행(택일)	평가하지 않음	평가하지 않음
	평가	평가

다. 건설계약의 수익인식방법 개정⁸⁴⁾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도 과거와 같이 수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설계약·예약매출의 수익인식시 계약기간의 1년 이상 또는 미만의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기준으로 통일하였다. 다만,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나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회계상 및 세무상 수익인식시기가 다를 경우 지급배당 소득 공제(법인세법 제51조의2)의 적용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해서 인도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계약기간 1년 미만인 건설계약·예약매출의 경우에는 결산상 진행기준을 적용한 경우에도 인도기준으로 신고조정할 수 있도록 선택이 허용되었다.

라. 중소기업 장기할부거래의 회수기준 신고조정 허용⁸⁵⁾

2010년 12월 30일이 속하는 회계기간부터 국제회계기준에서 회수기준의 적용을 금지하여 현행세법을 유지할 경우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중소기업은 세법상 회수기준의 적용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결산상 인도기준을 적용한 경우에도 회수기준으로 신고조정할 수 있도록 선택이 허용되었다. 따라서, 이들 기업의 경우 회계상 및 세법상 수익인식시기 간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84)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85)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마. 건설계약의 수익인식방법 개정⁸⁶⁾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도 과거와 같이 수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의 1년 이상 또는 미만의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 기준으로 통일하였다. 다만,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나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회계상 및 세법상 수익인식시기가 다를 경우 지급배당 소득공제(법인세법 제51조의2)의 적용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해서 인도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계약기간 1년 미만인 건설계약·예약매출의 경우에는 결산상 진행기준을 적용한 경우에도 인도기준으로 신고조정할 수 있도록 선택이 허용되었다.

제3절 회계기준과 세법 간의 시가 개념의 비교 및 분석

회계기준 및 세법에서 정확한 수익의 측정을 위해서는 공정가치 또는 시가의 개념이 필요하게 된다. 회계상 공정가치의 개념은 세법상 시가의 개념과 유사하지만 차이점도 존재한다. 회계상 공정가치는 거래당사자들이 결정한 거래조건이기 때문에 사후적인 문제의 발생가능성이 낮은 반면 세법상 시가는 거래당사자들이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매우 엄격한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회계상 거래금액이 세법상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다수 발생해서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분쟁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번 절에서는 세법상 시가의 개념을 정리하면서 회계상 시가와 차이점을 분석하기로 한다.

86)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1. 회계상 시가의 개념

회계상 시가란 공정가치를 의미한다. 공정가치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하며 서로 교환하는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의 가액이다. 이처럼 회계상 시가의 개념이 단순한 이유는 회계상 거래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른 거래의 완성일 뿐 그 가액의 공정성에 대하여 재무제표 작성시에 논의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이다.

2. 법인세법상 시가의 개념

가. 시가의 의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하며, 이를 “시가”라고 한다.

판례 등에서는⁸⁷⁾ 시가에 대하여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가격”, 혹은 “자유경쟁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인인 판매당사자간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 등으로 정의하는데, 경쟁시장에서 특수관계가 아닌 자와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자유의사에 의해 형성되는 가격을 시가로 보는 것이다.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예시된 개념들은 적정이율, 적정요율, 적정임대료, 적정대가, 통상이율, 통상요율, 통상판매가격 등과 같이 법인의 행위에 대응하는 정상적인 대가라는 개념을 기본적인 기준으로 하고 있다. 즉, 행위시에 거래쌍방 모두가 그 이익 및 효용

87)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누90.

의 극대화에 부합되지 않는 가격 하에 수행되었다면 부당한 행위로 인정되는 것으로 모든 거래에서 이러한 적정대가를 파악하는 것이 부당행위 계산과 부인을 위한 필수적인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시가가 분명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의미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주권상장 및 코스닥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을 당해 주식의 시가로 평가하도록 평가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했고, 동종 혹은 유사한 거래대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먼저 이 거래대상이 자유경쟁시장에서 어떤 금액에 거래되고 있는지가 적정대가 결정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즉, 일반상품·제품 및 자산의 임대료, 자금의 이자율, 용역에 대한 수수료 등은 동일한 조건 하에 동종의 거래대상이 많으므로 적정대가 확정에 큰 문제가 없으나, 부동산 및 비상장 유가증권 등은 거래대상 자체의 속성이 독립적이고 비교대상이 많지 않으므로 이를 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시가의 파악을 위해 적용되는 방법은 ① 동일 거래대상 혹은 동일 유형·조건인 시가와 비교, ② 투입원가에 통상이익률을 가산하는 방법, ③ 적정이익률로 할인하는 방법 등이다.

한편, 이상의 방법에 의하여 시가를 결정할 수 없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는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한 것을 시가로 과세하는 경우와 시가라고 신고한 내

용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그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하여야 한다.⁸⁸⁾

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1) 자산의 매매 등 일반적인 거래

① 일반원칙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의 순서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며 그 단계를 건너뛰면 안된다.⁸⁹⁾ 시가가 불분명한 주식 등의 가액은 당해 주식 등의 상장·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평가의 순서상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② 감정가액

시가로 간주되는 감정가액이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말하며, 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⁹⁰⁾ 이 때 감정가액이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어야 한다. 따라서, 상법 제2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개인 감정평가사에 의한 감정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아니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시가로 보지 않는다. 또한,

88)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3423.

89)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90)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거래 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이며,⁹¹⁾ 과세시점에서 거래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감정하는 경우 등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거래당시 시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거래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이 신뢰성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그 신뢰성 여부는 구체적으로 비교·검토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⁹²⁾ 있어 소급감정가액을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

시가 및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경우에 따라서는 “상증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 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상증법 제61조 내지 제64조에는 모든 거래대상의 평가가액 결정방법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거래라 할지라도 적정대가에 해당하는 가격은 파악할 수 있는데, 산출가격의 높고 낮음이나 법인이 선택한 행위에 관계없이 앞의 일반적 결정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 결정과정을 거치면서 전단계에서 객관적이며 적절한 가격을 파악하지 못하면 후단계로 넘어가는데 전단계 가액이 후단계 가액보다 높은 것이 보통이지만 수급상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가 혹은 실거래가액이 정부의 시가표준액이나 상증법을 준용한 가액보다 낮을 경우도 있다. 판례 등은 이와 같이 정부의 시가표준액 등보다 낮을 수 있는 시가 등을 적용하여 조세의 부담이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거래가액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이를 우선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⁹³⁾

91) 법인 46012-3089, 1996. 11. 6 ; 법인 46012-3539(1999. 9. 20).

92)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누4761. 선고 및 국심 93부1731(1993. 12. 30).

93)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408.

이는 시가에 대한 일반적 정의와 상증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르면 당연한 해석이며 과세권자의 직권남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지켜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장부상에 계상된 가격이 객관성은 있으나 감정가액이나 거래시가 등과 비교해 차이가 나면 시가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⁹⁴⁾

상증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는 동 법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⁹⁵⁾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개별자산에 대하여 동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의 순자산가액은 동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동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동 법 제66조의 특례규정이 적용된다.⁹⁶⁾

(2) 금전의 대여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차용하는 때에는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법인이 선택한 이자율을 시가로 하되,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이 경우 선택한 이자율은 해당되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였으나 그 이후 사업연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일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한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⁹⁷⁾

94) 법인1264.21-2486, 1983. 7. 16.

95) 법인46012-1350, 2000. 6. 12.

96) 법인46012-2068, 2000. 10. 9.

9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3조.

(3) 유형·무형자산의 제공

금전을 제외한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시가, 감정가액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지만,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산식에 의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⁹⁸⁾

$$(\text{당해 자산의 시가} \times 50\% - \text{전세금 등}) \times \text{정기예금이자율}$$

(4) 건설 기타 용역의 제공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시가, 감정가액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지만,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산식에 의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

$$\text{용역의 투입원가(직접비 및 간접비 포함)} \times \text{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의 수익률}^{99)}$$

3. 소득세법상 시가의 개념

소득세법 시행령 및 동 법 기본통칙에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로 예시된 개념들은 시가, 적정이율, 적정요율, 적정임대료, 적정대가, 통상이율, 통상요율, 통상판매가격, 무수익자산, 무상 및 인하단가와 미달대가 등과 같이 거주자의 행위에 대응하는 정상적인 대가라는 개념을 기본적 기준으로 하고 있다. 즉, 행위시에 거래쌍방 모두가 그 이익 및 효용의 극대화에 부합되지 않는 가격 하에 수행되었다면 부당한 행위로 인정되는 것으로 모든 거래에서 이러한 적정대가를 파

98) 서면2팀-2394, 2004. 11. 22.

99)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원가) ÷ 원가.

악하는 것이 부당행위계산과 부인을 위한 필수관건이라 할 것이다. 적정 대가는 개념 자체의 추상성뿐만 아니라 거래대상 및 거래조건의 다양성으로 인해 결정에 많은 논란이 따르는데 적정대가의 일반적인 결정과정은 아래와 같다.

동종 혹은 유사한 거래대상이 존재하는 경우 먼저 이 거래대상이 자유 경쟁시장에서 어떤 금액에 거래되고 있는지가 적정대가 결정의 기본이 된다. 즉, 일반상품, 제품 및 자산의 임대료, 자금의 이자율, 용역에 대한 수수료 등은 동일한 조건 하에 동종의 거래대상이 많으므로 적정대가 확정에 큰 문제가 없지만 부동산 및 비상장 유가증권 등은 거래대상 자체의 속성이 독립적이고 비교대상이 많지 않으므로 결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과 제4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도록 하였다.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시가는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 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되,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4. 부가가치세법상 시가의 개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물로 받는 경우 공급가액의 결정은 대가로 받은 현물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한다는 것이다.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라 함은 물물교환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며, 기타 공사대금으로서 체비지를 받는 경우 또는 건물을 신축하여 주고 일정기간 건물사용권을 가지는 경우 등이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는 시가를 아래의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 ①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 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 ② ①의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위 가격은 재화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자가공급의 경우에는 해당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표준에 해당 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처럼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거래세의 특징 때문에 현금 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시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시가를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의 개념

가. 시가의 의의

상증법상 재산의 평가에서는 동법 제66조에서 규정하는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특례 규정을 제외하고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다. 이 경우 시가란 평가기준시점의 경제적 가치를 화폐단위로 표시하는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써 동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불특정다수의 당사자 간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고, 특정거래에 특정한 주관성이 개입된 경우에는 설사 거래가 있었다라도 시가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시가는 자유롭게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므로, 자유스럽지 못한 거래나 일시적인 고가·저가의 거래는 시가로 볼 수 없다.

나. 시가의 범위

시가는 매매에 의하여 비로소 나타나고 시간의 경과로 변동되는 것이어서 재산을 소유하는 기간 중 어느 시점의 평가액을 파악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상증법에서는 평가기준일과 근접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의 실제 평가액을 평가기준일의 평가액으로 의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평가기준일과 근접한 기간의 범위를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또는 증여일 전후 3개월로 하도록 하고, 동(同) 기간 중 아래와 같이 일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시가로 인정한다. 다만, 평가기간이 아닌 기간 중에 아래와 같은 일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감정가액평가서의 작성일이나 보상가액 등의 결정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 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

회의 자문을 거쳐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일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액(이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평가의 보충적 방법으로 사용하되, 다만 상속개시일 전 6개월 또는 증여개시일 전 3개월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시까지의 가액만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다(상증법 시행령 제49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① 매매사실이 있는 재산

그 매매거래가액(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함)으로 하고,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3개월) 이내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② 감정재산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의미함)이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평가기준일 현재 원형대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하고,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또는 3개월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감정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80% 이상인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감정가액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에는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

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으로 한다.

- ④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⑤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이 때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이하 “원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1년의 범위 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이를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으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부실감정기관에 대하여 제재를 하고 있다(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한편,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 주식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주식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기준가격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고 있으며, 비상장주식의 경우는 순이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대2(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는 2대3)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순자산가치를 평가할 때는 그 기업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해 평가기준일 전·후 6월 내(증여재산은 3월 내)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인정하고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주식 및 출자지분 자체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수용·경매 또는 공매재산

당해 재산에 대한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제외하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3개월) 이내인지 여부는 보

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①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경매·공매로 취득한 경우
- ② 경매·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출자총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 ③ 경매·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 ④ 상기의 평가액에 2 이상의 재산이 포함된 경우

매매·감정·수용·공매 등에 있어서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되 동일한 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이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평가에 있어서는 주관적인 요소는 배제되어야 하며, 객관적 요소로서의 다른 재산과의 교환가치로서 파악되어야 하고, 그 재산의 현황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 재산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정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제4절 회계기준과 세법 간의 비교 및 분석-건설계약을 대상으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해 회계기준과 세법 간의 괴리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거래는 건설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 실무상으로도 건설계약

에 대한 회계처리의 불명확성과 세무조정의 복잡성에 대한 문제점이 다수 지적되고 있다. 이번 절에서는 건설계약으로 범위를 좁혀서 회계기준과 세법 간의 비교 및 분석을 진행하기로 한다.

1. 건설계약의 회계처리 방법

가. 국제회계기준 1011호 건설계약

건설계약과 관련한 수익과 원가의 회계처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1호에 따른다. 건설계약에 따른 활동의 성격으로 인해 계약활동이 시작되는 날과 종료되는 날은 보통 다른 회계기간에 귀속된다. 따라서, 건설계약의 회계처리에 대한 핵심사항은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를 건설공사가 수행되는 회계기간에 배분하는 것이다. 동(同)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정한 인식기준을 사용하여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를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는 시기를 결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수익인식기준의 적용에 관한 실무적 지침을 제공한다.

(1) 적용범위

동(同) 기준서는 건설사업자의 재무제표에서 건설계약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건설계약은 교량, 건물, 댐, 파이프라인, 도로, 선박 또는 터널과 같은 단일 자산을 건설하기 위하여 체결할 수 있다. 또한 설계, 기술 및 기능 또는 그 최종 목적이나 용도에 있어서 밀접하게 상호 연관되거나 상호의존적인 복수자산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계약의 예로 정제시설과 기타 복합 생산설비나 기계장치의 건설이 있다. 또한, 동(同) 기준서의 목적상 건설계약은 아래의 계약을 포함한다.

- ① 공사관리와 설계용역의 계약과 같이 자산의 건설에 직접 관련된 용역제공 계약
- ② 자산의 철거나 원상회복, 그리고 자산의 철거에 따르는 환경 복구에 관한 계약

건설계약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동(同)기준서의 목적상 정액계약과 원가보상계약으로 분류한다. 일부 건설계약에는 정액계약과 원가보상계약의 성격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예컨대, 사전에 가격의 최고한도를 합의한 원가보상계약이 그러하다.

(2) 용어의 정의

동(同)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① 건설계약

단일 자산의 건설이나 설계, 기술 및 기능 또는 그 최종 목적이나 용도에 있어서 밀접하게 상호연관되거나 상호의존적인 복수 자산의 건설을 위해 구체적으로 합의된 계약

② 정액계약

계약금액을 정액으로 하거나 산출물 단위당 가격을 정액으로 하는 건설계약. 경우에 따라서는 물가연동조항을 포함한다.

③ 원가보상계약

원가의 일정비율이나 정액의 수수료를 원가에 가산하여 보상받는 건설계약. 이 경우 원가는 당사자 간에 인정되거나 계약서에 정의된 원가를 말한다.

(3) 단일 건설계약의 충족 내용

동(同) 기준서는 일반적으로 건설계약별로 적용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계약이나 복수계약의 실질을 반영하기 위하여 단일계약에 대해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한 구성단위별로 동(同) 기준서를 적용하거나 복수 계약을 하나의 계약으로 보아 동(同) 기준서를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어느 한 계약이 복수 자산을 포함하는 경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각 자산의 건설을 별개의 건설계약으로 본다.

- ① 각 자산에 대하여 별개의 공사제안서가 제출된다.
- ② 각 자산에 대하여 개별적 협상이 이루어졌으며, 건설사업자와 발주자는 각 자산별로 각 자산과 관련되는 계약 조건을 수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 ③ 각 자산별로 원가와 수익의 식별이 가능하다.
발주자의 수와 관계없이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복수계약은 단일 건설계약으로 본다.
- ① 복수계약이 일괄적으로 협상된다.
- ② 복수계약이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사실상 전체로서의 목표 이윤을 추구하는 단일 프로젝트의 일부이다.
- ③ 복수계약이 동시에 진행되거나 계속하여 순차적으로 수행된다.

발주자의 선택에 의하거나 계약의 수정에 의하여 추가적인 자산을 건설하는 계약이 있다. 추가되는 자산의 건설은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개의 건설계약으로 본다.

- ① 추가되는 자산이 설계, 기술 또는 기능에 있어서 원래의 계약에 포함된 자산과 유의적으로 차이가 있다.
- ② 추가되는 자산의 계약금액이 원래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협상된다.

(4) 계약수익

계약수익은 최초에 합의한 계약금액과 공사변경, 보상금 및 장려금에 따라 추가되는 금액으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 ① 수익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 ②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계약수익은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이러한 계약수익의 측정은 미래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계약수익의 추정치는 후속사건이 발생하거나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자주 수정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계약수익은 기간별로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 ① 건설사업자와 발주자가 계약이 최초로 합의된 회계기간의 후속기간에 계약수익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공사내용의 변경이나 보상금에 합의하는 경우
- ② 물가연동조항에 따라 정액계약의 수익금액이 증가되는 경우
- ③ 건설사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완공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위약금을 부담한 결과 계약수익금액이 감소되는 경우
- ④ 정액계약이 산출물 단위당 고정가격에 기초하여 정해진 경우 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계약수익이 증가하는 경우

공사변경은 계약상 수행하는 공사의 범위를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공사변경에 따라 계약수익은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공사변경의 예로 건설대상 자산의 사양이나 설계를 변경하거나 계약기간을 변경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사변경을 계약수익에 포함한다.

- ① 발주자가 공사변경과 변경에 따른 수익금액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

②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보상금은 건설사업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원가를 발주자나 다른 당사자에게서 보상받으려는 금액이다. 예컨대, 발주자에 의하여 공사가 지체되거나, 제시한 사양이나 설계에 오류가 있거나, 공사변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보상금이 발생할 수 있다. 보상금에 따른 수익금액은 측정하는 데 불확실성이 높으며 자주 협상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보상금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계약수익에 포함한다.

① 협상이 상당히 진전되어 발주자가 보상금의 청구를 수락할 가능성이 높다.

② 발주자가 수락할 가능성이 높은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장려금은 특정 성과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건설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추가금액이다. 예컨대, 공사계약의 조기 완료에 대하여 건설사업자에게 계약상 정해진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다. 장려금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계약수익에 포함한다.

① 계약이 충분히 진행되어 특정 성과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② 장려금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계약수익은 최초로 합의한 계약금액과 추가수입금액(공사변경에 따른 수익과 보상금 및 장려금 수익)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5) 계약원가

계약원가는 아래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① 특정계약에 직접 관련된 원가

② 계약활동 전반에 귀속될 수 있는 공통원가로서 특정계약에 배분할

수 있는 원가

- ③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기타 원가
특정계약에 직접 관련된 원가의 예는 아래와 같다.
- ① 현장감독을 포함한 현장인력의 노무원가
- ② 건설에 사용된 재료원가
- ③ 계약에 사용된 생산설비와 건설장비의 감가상각비
- ④ 생산설비, 건설장비 및 재료를 현장으로 운반하거나 현장에서 운반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 ⑤ 생산설비와 건설장비의 임차원가
- ⑥ 계약과 직접 관련된 설계와 기술지원 원가
- ⑦ 예상하자보수원가를 포함한 복구 및 보증공사의 추정원가
- ⑧ 제3자의 보상금 청구

이러한 원가는 계약수익에 포함되지 않은 부수적 이익만큼 차감될 수 있다. 이러한 부수적 이익의 예로 잉여자재를 판매하거나 계약종료시점에 생산설비와 건설장비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들 수 있다.

계약활동 전반에 귀속될 수 있는 공통원가로서 특정 계약에 배분할 수 있는 원가의 예는 아래와 같다.

- ① 보험료
- ② 특정 계약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설계와 기술지원원가
- ③ 건설간접원가

이러한 원가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배분하며, 유사한 성격의 모든 원가에 일관되게 적용한다. 원가배분은 건설활동의 정상조업도 수준에 기초한다. 건설간접원가에는 건설인력의 급여지급에 대한 사무처리원가를 포함한다. 계약활동 전반에 귀속될 수 있는 공통원가로서 특정계약에 배분할 수 있는 원가에는 차입원가도 포함한다.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기타원가에는 계약조건에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일부 일반관리원가와 개발원가를 포함할 수 있다.

계약활동에 귀속될 수 없거나 특정계약에 배분할 수 없는 원가는 건설계약의 원가에서 제외한다. 이러한 원가에는 아래의 항목들이 포함된다.

- ① 계약에 보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일반관리원가
- ② 판매원가
- ③ 계약에 보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연구개발원가
- ④ 특정계약에 사용하지 않는 유희생산설비나 건설장비의 감가상각비

계약원가는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의 최종완료일까지의 기간에 당해 계약에 귀속될 수 있는 원가를 포함한다. 그러나 계약에 직접 관련되며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계약체결 전에 발생한 원가는 개별적으로 식별이 가능하며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계약의 체결가능성이 높은 경우 계약원가의 일부로 포함한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를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이 후속기간에 체결되더라도 계약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계약원가는 특정계약직접원가(재료비, 노무비, 특정계약관련 경비, 복구 및 보증원가의 추정원가, 제3자의 보상금 청구), 공동원가(보험료, 비특정설계와 기술지원원가, 건설간접원가) 및 기타원가(발주자에 청구한 일부 일반관리원가와 개발원가 등)로 구성되는 것이다.

(6) 계약수익과 비용의 인식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건설계약과 관련한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는 보고기간 말 현재 계약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한다. 건설계약에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에는 문단 36에 따라 관련 손실을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정액계약의 경우에는 아래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 ① 총계약수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② 계약과 관련된 경제적 효익이 건설사업자에게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 ③ 계약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계약원가와 보고기간 말 현재의 계약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④ 특정계약에 귀속될 수 있는 계약원가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 실제 발생한 계약원가를 이전 추정치와 비교할 수 있다.

원가보상계약의 경우에 아래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 ① 계약과 관련된 경제적 효익이 건설사업자에게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 ② 보상이 특정되어 있는지에 관계없이 특정계약에 귀속될 수 있는 계약원가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계약이 합의된 이후에 신뢰성 있는 추정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계약으로 아래의 사항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 ① 건설대상 자산과 관련한 각 당사자의 구속력 있는 권리
- ② 교환 대가
- ③ 결제의 방법과 조건

회수가능성이 높지 않은 계약원가는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발생한 계약원가의 회수가능성이 높지 않아 즉시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는 상황의 예는 아래와 같다.

- ① 충분한 구속력이 없는 계약. 즉, 계약의 유효성이 심각하게 의심되는 경우

- ② 계약이행의 완료가 계류 중인 소송이나 입법의 결과에 좌우되는 계약
- ③ 수용되거나 몰수될 가능성이 높은 자산과 관련한 계약
- ④ 발주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계약
- ⑤ 건설사업자가 계약이행을 완료할 수 없거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계약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한다.

- ① 수익은 회수가가능성이 높은 발생한 계약원가의 범위 내에서만 인식한다.
- ② 계약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계약의 초기단계에는 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계약원가는 회수가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계약수익은 회수가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발생원가를 한도로 인식한다. 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으므로 이익은 인식하지 않는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표 2-25>와 같다.

<표 2-25> 계약수익과 비용의 인식

상 황	계약수익과 비용의 인식
건설계약 결과의 신뢰성 추정 가능	진행기준에 의해 계약수익 · 비용의 인식
건설계약 결과의 신뢰성 추정 곤란	계약수익: 회수가가능한 계약원가의 범위 내에서 인식 계약원가: 발생한 기간비용으로 인식
총계약원가가 총계약수익을 초과가능	예상손실을 즉시 비용으로 인식
신뢰성 추정 불확실성 해소	진행기준에 의해 계약수익 · 비용의 인식

(7) 예상손실의 인식

총계약원가가 총계약수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예상되는 손실을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예상손실은 아래의 사항과 관계없이 결정

된다.

- ① 당해 계약의 공사가 시작되었는지의 여부
- ② 계약활동의 진행정도
- ③ 단일건설계약으로 취급되지 않은 다른 계약에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 금액

(8) 진행기준

계약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을 진행기준이라고 한다. 이 방법에 따르면 계약수익은 특정 진행률에 도달하기까지 발생한 계약원가에 대응되며, 그 결과로 공사진행률에 비례하여 수익, 비용 및 이익이 보고된다. 이 방법은 특정 기간의 계약활동과 성과에 대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진행기준 하에서 계약수익은 공사가 수행된 회계기간의 당기손익에 수익으로 인식하며, 계약원가도 통상적으로 관련 공사가 수행된 회계기간의 당기손익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당해 계약의 총계약원가가 총계약수익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당해 초과액은 문단 36에 따라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계약상의 미래 활동과 관련된 계약원가가 미리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계약원가는 회수가능성이 높은 경우 자산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원가는 발주자에게 청구하여 수령할 금액을 의미하며 흔히 미성공사로 분류한다.

건설계약의 결과는 그 계약과 관련된 경제적 효익이 건설사업자에게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당기손익에 계약수익으로 이미 인식한 금액의 회수가능성에 불확실성이 발생한 경우, 회수 불가능한 금액이나 더 이상 회수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는 금액은 계약수익을 조정하기 보다는 당기 비용으로 인식한다.

또한, 건설사업자는 효과적인 내부 재무예산 및 보고체제를 갖추는 것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 건설사업자는 계약의 진행에 따라 계약수익과 계약원가의 추정치를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정치를 수정한다. 추정치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계약의 진행률은 다양한 방식으로 결정될 수 있다. 건설사업자는 수행한 공사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계약의 성격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법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

- ①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
- ② 한 공사의 측량
- ③ 공사의 물리적 완성비율

진행률을 누적발생계약원가 기준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수행한 공사를 반영하는 계약원가만 누적발생원가에 포함한다. 진행률 산정을 위한 누적발생원가에서 제외되는 원가의 예는 아래와 같다.

- ① 현장에 인도되었거나 계약상 사용을 위해 준비되었지만 아직 계약 공사를 위해 설치, 사용 또는 적용이 되지 않은 재료의 원가와 같은 계약상 미래 활동과 관련된 계약원가. 단, 재료가 계약을 위해 별도로 제작된 경우는 제외한다.
- ② 하도급계약에 따라 수행될 공사에 대해 하도급자에게 선급한 금액
진행기준은 매 회계기간마다 누적기준으로 계약수익과 계약원가의 현행 추정치에 적용한다. 따라서, 계약수익이나 계약원가의 추정치 변경의 효과나 계약결과의 추정치 변경의 효과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변경된 추정치는 변경이 이루어진 회계기간과 그 후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수익과 비용의 금액 결정에 사용한다.

9) 공시

아래의 사항들은 주석으로 공시한다.

- ① 당기에 수익으로 인식한 계약수익금액
- ② 당기에 인식한 계약수익의 결정방법
- ③ 계약 진행률의 결정방법

보고기간 말 현재 진행 중인 계약과 관련해서는 아래의 사항들을 공시한다.

- ① 누적발생원가와 누적손익의 합계액
- ② 선수금
- ③ 회수보류액¹⁰⁰⁾

재무제표에는 아래의 사항들을 표시한다.

- ① 미청구공사 총액은¹⁰¹⁾ 자산으로 표시한다.
- ② 초과청구공사 총액은¹⁰²⁾ 부채로 표시한다.

나.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5호는 국제재무보고기준해석위원회

100) 회수보류액은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전제 조건이 모두 충족되거나 공사의 하자가 수정될 때까지 지급이 보류되고 있는 진행청구액을 말한다. 진행청구액은 발주자의 실제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상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청구한 금액이다. 선수금은 관련 공사가 수행되기 전에 발주자에게서 수령한 금액이다.

101) 미청구공사 총액은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이 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모든 진행 중인 계약에 대하여 아래의 ①에서 ②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 ① 누적발생원가와 인식한 이익의 합계금액
- ② 인식한 손실과 진행청구액의 합계금액

102) 초과청구공사 총액은 진행청구액이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모든 진행 중인 계약에 대해 아래의 ②에서 ①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 ① 누적발생원가와 인식한 이익의 합계금액
- ② 인식한 손실과 진행청구액의 합계금액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Interpretations Committee, 이하 경우에 따라서는 “IFRIC”)가 제정한 국제재무보고기준해석 제15호(IFRIC 15) “부동산건설약정(Agreements for the Construction of Real Estate)”에 대응하는 해석이다. 동(同) 해석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기업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동(同) 해석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한 기업(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동(同) 해석서는 “직접 부동산을 건설하거나 하도급 건설업자를 통해 부동산을 건설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동(同) 해석서는 부동산건설약정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과 제1018호 “수익” 중 어느 것의 적용범위에 속하는지와 부동산건설로 인한 수익은 언제 인식되어야 하는지가 중점적으로 논의된다.

부동산 산업에서는 직접 부동산을 건설하거나 하도급 건설사업자를 통해 부동산을 건설하는 기업이 건설완성 전에 하나 이상의 매수자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약정은 다양한 형식을 취한다. 예컨대, 주거용 부동산을 건설하는 기업은 건설이 아직 진행 중이거나 심지어 시작도 하기 전에 개별단위(아파트나 주택)의 판매를 개시할 수 있다. 각 매수자는 입주가능한 때에 특정 단위를 취득하기로 하는 약정을 그 기업과 체결한다. 일반적으로 매수자는 기업에 예치금을 지급하는데 동(同) 예치금은 당해 기업이 계약조건에 따라 완성된 단위를 인도하지 못할 때에만 환급이 가능하다. 매수가액의 잔금은 일반적으로 계약완성시점, 즉 매수자가 해당 단위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하는 때에만 기업에 지급된다. 상업용 부동산이나 산업용 부동산을 건설하는 여러 기업이 하나의 매수

자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매수자는 최초약정시점과 계약완성시점 사이에 중도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다. 건설은 건설 시작 전에 매수자가 소유하거나 리스하고 있는 토지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아래의 논의에서는 기업이 사전에 부동산건설약정 및 관련 약정을 분석한 결과 대가의 전부나 일부를 수익으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당해 기업이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지속적인 관리상 관여를 하지 않을 것이며 건설된 부동산에 대해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가정한다. 대가의 일부를 수익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아래의 논의내용은 수익이 인식될 약정의 일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단일 약정에서 기업이 부동산건설 뿐만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제공(예: 토지 판매 또는 부동산관리용역 제공)하기로 계약할 수 있다. 기업 회계기준서 제1018호 문단 13에 따르면 그러한 약정은 별도로 식별가능한 여러 구성요소(부동산의 건설요소를 포함)로 구분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약정과 관련하여 받았거나 받을 총대가의 공정가치는 각 구성요소에 배분한다. 별도의 구성요소가 식별되는 경우 기업은 부동산의 건설요소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나 제1018호의 적용범위에 속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아래 1)의 기준을 적용한다. 이 때 건설계약에 해당하는 약정요소가 있다면 그 구성요소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의 분할기준을 적용한다.

아래의 논의에서는 부동산건설약정을 언급하지만 동(同) 논의내용은 다른 구성요소가 포함된 약정에서 식별되는 부동산의 건설요소에도 적용된다.

- (1) 약정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와 제1018호 중 어느 적용범위에 속하는지 결정

부동산 건설약정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와 제1018호 중 어느 것

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지의 결정은 계약조건 및 관련된 모든 사실과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한 결정을 할 때에는 각 약정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약정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문단 3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계약의 정의(단일 자산이나 복수 자산의 건설을 위해 구체적으로 협의된 계약)를 충족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를 적용한다. 부동산 건설약정은 매수자가 건설 시작 전에 부동산의 주요 설계구조요소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건설진행 중에 주요 구조변경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 (실제로 그러한 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건설계약의 정의를 충족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가 적용될 때 건설계약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문단 5(1)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문단 4에 따라 부동산 건설에 직접 관련되는 용역제공 계약이나 구성요소도 포함된다.

반대로 매수자가 부동산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한적인 능력만을 가지는, 예컨대 매수자가 기업이 지정한 일정 범위의 선택사항 중 하나의 설계를 택하거나 기본설계에 대해 사소한 변경을 지정할 능력만을 가지는 부동산건설약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재화판매약정에 해당한다.

(2) 부동산건설로 인한 수익의 회계처리

① 약정이 건설계약인 경우

약정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의 적용범위에 속하고 그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에 따라 계약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다. 약정이 건설계약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 기업은 당해 약정이 용역제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재화판매를 위한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② 약정이 용역제공 약정인 경우

기업이 건설재료를 취득하여 공급할 의무가 없다면 약정은 오직 기업 회계기준서 제1018호에 따른 용역제공약정일 수 있다. 이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는 동(同) 기준서 문단 20의 기준이 충족되면 진행기준을 사용하여 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한 거래의 수익 및 관련비용의 인식에는 일반적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③ 약정이 재화판매 약정인 경우

기업이 매수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건설재료와 더불어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면 그 약정은 재화판매약정에 해당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문단 14에서 정하고 있는 수익인식기준이 적용된다.

기업이 건설이 진행됨에 따라 그 상태의 미성공사에 대한 통제와 소유권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을 그 상태로 매수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문단 14의 모든 기준이 건설 진행 중에 계속적으로 충족된다면 기업은 진행기준을 사용하여 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다. 그러한 거래의 수익 및 관련비용의 인식에는 일반적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기업이 부동산에 대한 통제와 소유권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을 어느 한 시점(예: 완성시점, 인도시점 또는 인도 후 시점)에 일괄적으로 매수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문단 14의 모든 기준이 충족될 때에만 수익을 인식한다.

기업이 이미 매수자에게 인도한 부동산에 대해 추가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문단 19에 따라 부채와 비용을 인식하고, 그 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측정한다. 기업

이 이미 매수자에게 인도한 부동산과는 별도로 식별되는 재화나 용역을 추가로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제공해야 하는 재화나 용역이 동(同) 해석서의 문단 8에 따라 별도의 판매요소로 식별되었을 것이다.

(3) 공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문단 14의 모든 기준이 건설진행 중에 계속적으로 충족되는 약정에 대해 진행기준을 사용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문단 17)에는 아래의 사항들을 공시한다.

- ① 어느 약정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문단 14의 모든 기준을 건설 진행 중에 계속적으로 충족하는지를 결정하는 방법
- ② 회계기간 중 그러한 약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
- ③ 진행 중인 약정의 진행률을 결정하는 방법

위에서 설명하는 약정으로서 보고기간 말에 진행 중인 계약에 대해 아래의 사항들도 공시한다.

- ① 누적발생원가와 누적손익의 합계액
- ② 수취한 선수금

동(同)기준서를 요약하면 <표 2-2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다. K-GAAP과 K-IFRS의 비교¹⁰³⁾

(1) 주거용 부동산의 완성전 판매에 대한 진행기준 적용여부

주거용 부동산의 완성전 판매는 아파트 등을 완성하기 전에 청약을 받아 분양하는 것으로 예약매출 혹은 아파트 분양판매가 이에 해당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에서는 아파트 등 예약매출에 의한 건설공사계약을 명시적으로 적용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 반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에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적용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문단 7).

103) 본 절은 한국공인회계사회(2008)와 심태섭 외(2009)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이다.

〈표 2-26〉 약정의 조건에 따른 수익인식 방법

상황	수익인식 방법
약정이 건설계약인 경우	약정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의 적용범위에 속하고 그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에 따라 계약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다.
약정이 용역제공계약인 경우	기업이 건설재료를 취득하여 공급할 의무가 없다면 약정은 오직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에 따른 용역제공계약일 수 있다. 이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는 동(同) 기준서 문단 20의 기준이 충족되면 진행기준을 사용하여 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한 거래의 수익 및 관련 비용 인식에는 일반적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동(同) 기준서 문단 21).
약정이 재화판매계약인 경우	- 기업이 매수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건설재료와 더불어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면 그 약정은 재화판매약정에 해당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문단 14에서 정하고 있는 수익인식기준이 적용된다. - 기업이 건설이 진행됨에 따라 그 상태의 미성공사에 대한 통제와 소유권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을 그 상태로 매수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문단 14의 모든 기준이 건설진행 중에 계속적으로 충족된다면 기업은 진행기준을 사용하여 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다. 그러한 거래의 수익 및 관련비용의 인식에는 일반적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2) 계약수익과 계약원가의 인식시 진행기준의 적용

K-IFRS는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 가능한 경우 건설계약의 수익과 비용을 진행기준에 의하여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K-GAAP도 진행기준의 적용에 대하여 K-IFRS와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진행률 산정과 관련된 계약원가의 범위나 누적발생원가의 범위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K-IFRS에서 규정하는 수익인식기준을 유형별로 정리하면 〈표 2-27〉과 같다.

〈표 2-27〉 건설계약의 수익인식기준

구분	정액계약	원가보상계약
조건	- 총계약수익의 신뢰성 있는 측정가능 - 계약과 관련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음 - 계약완료에 필요한 계약원가와 진행률의 신뢰성 있는 측정이 가능 - 계약원가의 명확한 식별 및 신뢰성 있는 측정이 가능하여 실제 발생된 계약원가를 이전 추정치와 비교가능	- 계약과 관련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음 - 계약원가의 명확한 식별 및 신뢰성 있는 측정이 가능
조건 충족	- 진행기준에 의한 수익과 비용의 인식 -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손실인식	
조건 불충족	- 회수가능성이 높은 계약원가의 범위 내에서 수익인식 - 계약원가는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 - 손실이 예상되는 즉시 손실 인식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에서는 계약수익 뿐만 아니라 계약원가도 보고기간 말 현재 계약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문단 22). 반면 K-GAAP 제12호에서는 당기공사수익은 공사계약금액에 보고기간 말 현재의 공사진행률을 적용하여 인식한 누적공사수익에서 전기말까지 계상한 누적공사수익을 차감하여 산출하도록 하면서도 당기공사원가는 당기에 실제로 발생한 총공사비용(공사손실충당부채 전입액과 환입액 가감)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문단 25 및 26).

〈표 2-28〉 누적발생원가에서 제외되는 원가

구분	K-IFRS	K-GAAP
항목	- 미래의 활동과 관련되는 원가(예컨대, 공사수행을 위하여 미리 구매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 하도급자에 대한 선금금)	좌동
	- K-GAAP과 같이 특별히 명시하고 있지 아니함	- 토지의 취득원가 - 자본화대상 금융비용 - 재개발 등의 이주대여비 관련 순이자비용 - 공사손실충당부채 전입액

(3) 미청구공사와 초과청구공사의 재무보고서상 표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에 따르면 미청구공사는 (누적발생원가+인식한 이익)-(인식한 손실+진행청구액)으로 결정하여 재무보고서상 자산으로 표시하고, 초과청구공사는 (인식한 손실+진행청구액)-(누적발생원가+인식한 이익)으로 결정하여 재무보고서상 부채로 표시한다(문단 42-44). 반면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4) 추정공사손실의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는 추정공사손실이 있을 때 별도의 충당부채(provision)를 인식하지는 않고 “미성공사” 계정에서 직접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문단 43, 44). 즉, “미청구공사”나 “초과청구공사”를 계산할 때 함께 상계하는 것이다. 반면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는 별도의 “공사손실충당부채”를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문단 40).

(5) 주식사항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에서 요구하고 있는 주식사항 외에도 계약잔액, 계약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계약, 공사손실, 특정 장기채권 등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2. 건설계약 회계처리의 문제점

2011년부터 상장 건설업체의 경우에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건설업체와 회계법인 간에 다른 해석이 존재하므로 향후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와 회계감

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실무적으로 상당한 혼선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 중 건설공사계약에 대하여 수익 인식에 대한 문제는 아래와 같이 자체분양공사의 수익인식, PF공사의 수익인식 및 지분제 재개발·재건축 공사의 수익인식의 문제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상의 세 가지 회계상 수익인식의 문제와 이에 따른 세법개정이 필요한 항목이나 현행 세법상 세무조정의 처리에 대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가. 자체분양공사의 수익인식 방법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제2115호 부동산 건설약정에서는 부동산 건설에 대한 수익인식 방법은 국제회계기준 제1011호 “건설계약”과 제1018호 “수익”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1011호에 해당되는 진행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건설업체에 적용되는 부동산 건설약정(주로 자체분양공사를 다룸)은 국제회계기준 제1018호 “수익”을 적용하여 인도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회계기준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건설업체가 수행하고 있는 자체분양공사와 관련한 수익인식 방법이 “인도기준”과 “진행기준”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선 국제회계기준 제1011호 “건설계약”에 따라 진행기준을 적용하려면 그 첫 번째 근거는 자체분양공사를 인도기준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이 종료되고 그에 따른 대금이 잔금을 제외하고 공사완성 전에 대부분 입금이 되는 상황에서 공사기간중 수익인식을 전혀 할 수 없으므로 기간손익의 왜곡을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제회계기준 제2115호에서는 “건설계약”에 따른 진행기준이 적용되기 위한 조건으로 매수자가 건설 시작 전에 부동산의 설계 구조요소를 지정할 수 있는 경

우 또는 건설진행 중에 주요 구조변경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 (실제로 그러한 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진행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관련 현행법령에서 수분양자가 자기부담을 원칙으로 구조변경이 가능한 건설계약 형태가 이루어진다면 진행기준에 따른 수익인식이 가능할 것이다. 주택의 경우에는 내력벽 등과 같이 법적으로 변경이 제한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분양당시와 시기적 차이로 인하여 새로운 모델로 변경하는 경우 등이 조합아파트 사업 등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기지연과 추가공사비를 소비자가 부담한다면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설계변경을 거절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주택의 설계는 이미 주요 평형·구조 등이 정해져 있고 소비자가 설계를 선택하는 수준이므로 일반 건축물과는 달리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구조물을 디자인한다기 보다는 설계제품 판매와 유사한 형태를 갖는 것이다. 따라서, 설계비의 부담주체가 누구인지를 구분할 뿐 설계의 주체가 수익인식의 기준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국제회계기준 제2115호는 건설이 진행됨에 따라 그 상태의 미성공사에 대한 통제와 소유권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을 그 상태로 매수자에게 이전할 수 있고, 건설기간 중 국제회계기준 제1018호 문단 14의 재화판매로 인한 수익인식기준을 계속적으로 충족하는 경우에는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다. 주택분양공사의 경우 건설업체의 부도 또는 공정지연 등 정상적인 건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양보증업체에서 분양대금을 환급하거나 또는 다른 건설사를 선정하여 공정을 계속 진행하게 된다. 다른 건설사를 선정하여 공정을 계속 진행하고 기존의 건설사가 진행한 공정해당액을 보상받는다면 소유권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매수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한국의 주택분양 제도하에서 사업주체(시행사 또는 건설업체)는 입주

자 모집공고 승인신청일부터 입주예정자의 이전등기 신청가능일 이후 60일까지 부동산에 대한 담보물권 설정, 부동산 임차권의 설정, 매매 및 증여행위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제한은 입주자 모집과 동시에 사업주체의 부동산 소유에 관한 권리를 수분양자에게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출되었다. 또한, 분양후 중도금 납입이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분양계약은 해지할 수 없다. 해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위약금을 부담하고 해지가 이루어질수 있으며, 기존 통계에 따르면 약 17% 정도의 경제적 손실을 입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건설 및 분양제도 하에서 건설 및 분양계약이 완벽하게 보호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취소불능계약 하에서 건설공사수익을 진행기준으로 인식하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건설회사가 부도 또는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경우 기존 건설사와 분양자간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있다. 건설회사의 부도 등으로 사업진행이 불가한 경우 대한주택보증에 의하여 사업관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 경우 기존 분양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이루어지면 대한주택보증은 계약금등 분양대금을 환급하고, 사업장 공매 등을 통하여 환급액 및 사업비등을 충당하게 된다. 기타의 경우에는 다른 건설업체 등을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되고 기존의 분양자들은 잔여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공사목적물을 인도받게 된다. 이와 같이 건설사의 부도 등으로 계약해지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도 건설업체가 진행한 공사부분은 기성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주체가 바뀌어도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도 현행 국제회계기준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이 우리나라의 부동산 개발현실을 반영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동(同) 해석서의 제정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결론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지금이라도 우리나라의 부동산 분양형태가

진행기준에 가깝다면 조선업에서 파생상품에 대한 회계처리를 바꾼 것과 마찬가지로 해석서의 변경작업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 제1018호 “수익”에 따른 인도기준 적용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그 근거는 국제회계기준 제2115호가 우리나라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기본적으로 주택분양시장에서 분양이라는 용어가 물건을 판매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제품을 생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분양시장에서 토지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건설사에 있고 토지 위에 건축물을 지어 파는 것은 제품의 판매와 동일하다. 용지도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재료의 한부분이며 제품을 인도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 해석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진행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대한 신뢰가 크게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다만, 분양계약과 동시에 건설사의 토지가 수분양자에게 이전되는 계약구조가 만들어지거나 건설기간 중에 외국의 사례와 같이 전매가 가능한 제도가 뒷받침되어야만 현행 해석서에서도 진행기준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하여 자문기관의 의견은 계약 형태를 바꿔 수익인식을 진행기준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은 연구할 분야이나, 계약변경 등과 같은 경제적 실질의 변경은 의무이행을 누가 완료했는지, 진행하면서 의무를 완료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제도적으로 전매가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상의 문제에 대하여 현행 해석서가 존재하고 분양계약의 형태가 바뀌지 않는다면 인도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진행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소유권 이전 또는 자기부담원칙 하에 설계변경 등에 대한 권한부여 등에 대한 제도변경이 이루어져야 하고, 공사중단의 경우 소유권에 대한 위험과 효익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지 여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사항이다.

나. PF공사의 수익인식 방법

우리나라의 부동산(특히 주택)개발은 일반적으로 소규모 시행사를 사업주체로 하되 건설업체의 차입금 지급보증 등에 의하여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이루어지고 동(同) 자금에 의해 토지매입 잔금의 지급, 초기 사업자금 등의 집행 등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상황은 형식상으로는 사업주체가 시행사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면에서는 부동산 개발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건설업체에 있으므로 분양수익(도급공사 수익의 인식)의 인식, 차입금의 부채기록 등에 대한 회계처리를 건설업체가 직접 기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 될 수 있다.

시행사가 건설업체에 전속되어 해당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효익과 위험을 건설업체가 통제하고 있다면 건설업체는 이를 도급공사가 아닌 자체공사로 보아 회계처리하거나 연결범위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행사의 특징은 사업주체가 수행하여야 할 토지매입, 사업의 인·허가, 공사에 대한 설계·감리, 분양계획의 수립 및 분양활동, 건설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초과이익의 획득 등의 과정이 시행사 명의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건설업체의 관여와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일 것이다. 어떠한 경우는 시행사의 회계처리 또한 건설업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상황도 존재할 수 있다.

시행사를 실질과 형식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계약건별로 회사의 현업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 감사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며, 다양한 지표분석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아래와 같은 구분기준은 참고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아래의 구분기준은 실질지배력(de facto control) 측면에서 고려하므로, 시공사가 시행사에 대한 의결권(법규나 약정에 의한 권한 보유 및 의사결정기구 지배 포함) 지배

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이며, 인적관계 등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한다.

① 시행사의 의사결정에 시공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

계약서상 시공사와 시행사의 업무범위, 책임·의무가 구분되어 있고, 시행사의 업무 운영, 분양가 결정 또는 설계 업무 등에 대해 시공사가 결정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는 실질적인 시행사로 분류하고 계약상 또는 실질의 고려시 시공사가 시행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는 형식적인 시행사로 분류한다.

② 설계의 확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인허가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설계를 시행사가 수행하고, 시공사는 시행사의 설계에 대해 검토를 수행하나, 설계에 대한 최종 확정은 시행사가 하는 경우에 실질적인 시행사로 분류하고 설계에 대한 시공사의 관여 정도가 검토가 아닌 직접수행에 근접하고 시공사가 설계사의 지정, 설계 확정 및 설계변경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한 경우 형식적인 시행사로 분류한다.

③ 위험과 효익의 부담 정도

공사계약금액, 제공된 지급보증액, 분양율 등을 고려할 때 효익과 위험의 과반 이상을 시행사가 보유하느냐에 따라 실질적 시행사와 형식적 시행사를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 분양대금의 과반이상을 시공사가 도급금액으로 수령할 수 있으나, 도급금액은 시공사의 건설활동과 기타 용역에 대한 대가이며 효익은 분양활동의 결과에 따라 정해지므로 도급금액의 규모가 효익의 과반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미분양 발생시 위험의 측정에 있어서도 시공사

의 대물인수 및 할인매각 등을 통한 손실의 발생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④ 시행사의 독립성

시행사가 과거 분양실적이 있거나, 현재 다른 시공사와 다른 공사계약을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실질적인 시행사로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시행사가 설립목적, 연도, 자본금, 주주구성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공사계약을 위해 설립되고 해당 건설의 완료 후 소멸될 경우에는 형식적인 시행사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시행사가 형식상 시행사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의 부동산 개발의 특성상 시행사의 소규모 자본금, 건설업체 지급보증에 의한 금융조달구조, 미분양 발생시 건설업체에 대한 대물변제 등 건설업체를 사업주체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존재하게 된다. 우선 소규모 자본금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부동산개발 활동이 불가하므로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하여 업계에서는 부동산개발 활동의 성공 여부를 평가름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금의 크기 보다는 사업입지의 선정 및 토지확보에 있다는 의견도 있다. 사업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입지선정 및 토지확보 활동이 시행사에 의해 이루어지면 그 다음 단계인 금융구조의 수립, 건설업체의 지급보증, 건설활동 및 분양활동 등은 시스템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양적으로 표시될 수 없는 시행사의 아이디어, 능력 등은 시행사의 자본금 크기에 우선할 수 있다. 다음으로 건설업체의 시행사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행위가 부동산개발 활동에 따른 위험을 과반 이상 부담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PF 공사의 경우도 건설업체가 자체분양공사와 동일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건설업체의 시행사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 행위가 부동산건설 및 분양활동의 위험을 과반 이상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건설업체의 시스템은 수주단계에서 위험을 판단하여 수주여부를 결정하고 있고 미분양으로 인한 공사미수금의 대손위험은 시행사 물건을 10%이상 할인하여 대물변제 받음으로써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건설업체의 지급보증행위는 부동산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일반적인 도급공사 또는 SOC공사에 있어서도 건설업체의 지급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급보증행위 자체가 자체공사로 회계처리 하여야 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시행사와 건설업체의 도급공사계약에 초과이익에 대한 분배약정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부동산건설 및 분양활동이 종료된 후 시행사가 수취하는 이익이 일정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이익에 대하여 건설업체의 참여가 가능한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는 건설업체가 건설 및 분양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체분양사업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건설 및 분양활동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를 건설업체로 보아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형식상 시행사인 것으로 보아 건설업체의 자체공사로 보는 경우와 시행사와 건설업체의 계약 및 사업구조 등을 분석하여 자체공사로 보는 경우의 회계처리로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다. 우선 ① 건설업체의 별도재무제표 작성시 시행사의 회계처리를 건설업체의 재무제표에 직접 기록하는 방법과, ② 시행사를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로 지정하여 건설업체의 연결재무제표를 기록하는 방법이다. 시행사의 회계처리가 별도재무제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시행사의 건설 및 분양활동에 대한 정보를 완벽히 통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시행사를 연결대상으로 보는 경우에는 비지배주주 지분이 100%에 해당되는 기형적인 연결재무제표가 작성되게 된다.

시행사의 경우 시공사와 지분관계가 없거나 소수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연결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IAS 27의 지배력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SIC(Standing Interpretation Committee) 12의 SPE에 대한 위험·효익 분담요건을 적용할

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

즉, 검토기간 중 거래가 있는 시행사 전체를 대상으로 <표 2-29>의 지표에 따라 SPE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표 2-29> SPE 여부의 판단지표

지표	SPE 여부 판단 지표
성격과 활동범위	기업의 성격과 활동 범위에 대한 제한(예: 기업 활동이 단일 거래로 제한되거나, 특정산업으로 제한되거나,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활동이나 거래의 횟수나 금액이 제한되어 있는가?)된 경우
타기업에 의한 활동제한	다른 기업(예: 스폰서 혹은 본 기업을 필요에 의해 설립한 기업)이 해당 기업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한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기업이 영업 및 활동범위를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정도가 제한된 경우
영업변경 등의 제한	기업의 고객층에 대한 성격 및 범위(예: 기업은 한정된 고객을 상대로 영업하는가?)가 제한된 경우
제한된 고객 의사결정능력	타기업에 의해 의사결정능력에 대한 성격 및 범위(예: 기업에게 허가된 활동과 그 활동의 결과 및 수행능력에 대한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가 정해지는 경우 조직의 의사결정능력이 다른 조직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예: 스폰서 혹은 본 기업을 필요에 의해 설립한 기업)

시행사에 대한 <표 2-29>의 검토 결과 SPE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되지만, 하나의 통일된 결과를 얻을 수는 없었다. 따라서, 시행사의 연결여부에 대해서는 계약건별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시행사를 연결하는 경우 시공사의 별도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시의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며, 시행사를 연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공사로 보아 회계처리하되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은 회수가능성이 높은 발생한 계약원가의 범위 내에서만 인식하고 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우리나라의 PF 공사구조를 일괄하여 회계처리를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시행사가 건설업체에 전속되어(단일공사 수행 후 해

산 또는 해당 건설업체에 전속되어 완전히 통제되고 있는 경우 등) 있는 경우라면 건설업체의 자체공사로 처리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PF 공사의 경우 건설 및 분양 효익의 배분(초과이익분배약정 등) 여부, 위험의 분담구조(지급보증여부 및 미분양위험 발생시 건설업체의 담보권 발생여부 등)를 검토하여 개별계약별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행사가 SPE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결의 범위에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되, 별도재무제표의 작성시에는 연결시에 적용할 수익인식기준과 동일한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다. 지분제 재개발·재건축 공사의 수익인식 방법

지분제 재개발·재건축공사의 경우 조합과 시공사의 계약형태에 따라 도급제와 지분제로 구분될 수 있다. 도급제 계약방식을 공사진행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할 경우에는 특별한 쟁점이 없지만 지분제 계약에서는 일반분양분에 대한 시공사의 공사대금회수 방법이 일정세대의 분양과 조합분담금의 수취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자체공사의 인도기준 적용과 동일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지분제 공사에서 일반분양분에 대한 가격결정이나 위험과 효익을 시공사가 가져가게 되므로 인도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계약을 두 개로 분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공정가치계산에 의한 계약 및 원가의 구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추가연구가 있어야 할 부분이다. 일반분양분의 미분양시 현금에 의한 시공사 공사대금의 회수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도급공사일 것이나 대물에 의한 회수와 추가분양이 이루어져야 대금회수가 이루어져야 한다면 이것은 자체공사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사의 중간정산시 일반분양분까지 포함하여 정산이 이루어지고 분양가의 결정에 조합이 개입하여 전반적

인 공사의 과정을 통제하고 있다면 이것은 다른 측면의 문제이다.

진행기준 적용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의견들이 있다. 우선 현행 재건축·재개발 공사는 도급제와 지분제의 구분이 없어졌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과거에는 조합이 시공사의 주도 하에 건설과정에서 배제되었으나 현재의 재개발·재건축은 조합이 시공사의 일반분양분에 대한 설계, 시공과정에서의 관여 및 분양가의 결정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분양가의 결정에 있어 일반분양가의 결정이 조합분담금의 규모를 결정하게 되므로 조합은 일반분양가를 최대한 높이려는 의도를 갖게 되고 시공사는 일반분양가를 낮추어 조합분담금을 높이려는 의도를 갖게 되어 이러한 결정과정에서 상당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앞으로의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조합분담금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것을 불가피한 상황일 것이다. 그러한 경우 시공사의 공사대금에 대한 현금수취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지속적인 추세일 것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일반 분양분을 포함한 설계를 조합이 실시하며 공사도급계약 또한 조합명의로 진행한다. 또한, 건설중단시에도 조합분과 일반 분양분을 구분하지 않고 조합이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일반 분양분의 판매는 조합의 공사대금 재원마련 과정에서 미분양리스크의 일부를 시공사에 전가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조합과 시공사의 재개발·재건축 공사계약은 단일계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반 분양분을 인도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은 국제회계기준 제 1011호의 계약의 병합과 분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계약의 분할은 ① 각 자산에 대하여 별개의 공사제안서 제출, ② 각 자산에 대하여 개별적 협상이 이루어졌으며 건설사업자와 발주자는 각 자산별로 관련되는 계약조건을 수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을 것, ③ 각 자산별로 원가와 수익의 식별이 가능할 것의 3가지 조건 중 어느 것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다만, 진행기준을 적용한 후 미분양 발생으로 회수된 대물아파트

는 재고로 분류되면 매출액이 이중으로 인식되므로 재고자산이 아닌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 분양분에 대한 위험과 효익이 건설사에 있으므로 인도기준에 의한 수익인식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계약 분할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고 위험과 효익이 조합에 있으므로 재개발·재건축 공사 전체를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인식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제시되었으며, 이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에서 분석한 건설계약과 관련한 세 가지 문제점은 <표 2-30>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2-30> 건설계약 관련 회계처리의 문제점 요약

지표	SPE 여부 판단 지표
자체분양공사의 수익인식 방법	자체분양공사는 국제회계기준 제2115호 부동산건설업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인도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현재 IASB는 수익인식에 관한 ED에 대한 국가별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개발 제도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만 진행기준 인식이 가능할 것임.
PF공사의 수익인식 방법	① 활동 ② 의사결정 ③ 효익 ④ 위험 등의 지표에 대한 판단 후 형식적 시행사를 구분하고 특수목적법인(SPE)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되 별도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시의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며, 특수목적법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공사로 보아 회계처리하되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은 회수가가능성이 높은 발생한 계약원가의 범위 내에서만 인식하고 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함.
지분제 재개발·재건축 공사의 수익인식	일반분양분에 대한 위험과 효익이 건설사에 있으므로 인도기준에 의한 수익인식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계약분할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고 위험과 효익이 조합에 있으므로 재개발·재건축 공사 전체를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인식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제시되었으며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3. 건설계약과 관련한 세무상 쟁점¹⁰⁴⁾

이번 절에서는 이상에서 설명한 건설계약의 회계처리와 이들의 문제점으로 인해 검토할 필요가 있는 세무상 쟁점에 대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가. 적용범위 및 손익귀속시기의 결정

법인세법은 건설계약에 대하여 별도의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장기용역에 대하여 별도의 수익인식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즉, 건설, 제조, 기타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사업연도는 1년 이상의 경우는 진행기준이 원칙으로 하되 1년 미만은 인도기준으로 진행기준으로 결산한 경우에만 진행기준을 적용했으나, 2010년말 세법 개정으로 인해 모두 진행기준으로 통일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회계처리와 세법이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계약과 예약매출의 경우에는 결산상 진행기준으로 인식한 경우에도 인도기준으로 신고조정할 수 있도록 선택을 허용하였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회계처리와 세법 간의 차이가 더욱 커지면서 세금부담은 완화시킨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선택사항이므로 해당 기업이 진행기준으로 세무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나. 진행기준의 적용

진행기준에 의하여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경우 작업진행률을 계산해야 한다. 법인세법상 작업진행률은 원가기준법으로 계산한 비율을 의미하고, 건설계약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과 작업일수 또는 기성

104) 이번 절은 심태섭 외(2009)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이다.

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 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는 그 비율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진행기준의 적용방법과 누적발생원가의 계산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다. 즉, 과거 K-GAAP에서는 당기에 실제 발생한 원가를 수익에 대응하는 원가로 보는데 비하여 K-IFRS에서는 진행률로 계산한 원가(총추정원가에 진행률을 곱한 금액)를 수익에 대응하는 원가로 본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K-GAAP과 유사하게 규정되었기 때문에 당기 발생원가가 전액 비용으로 계상되고 손금으로 인정되었으나, 국제회계기준에서는 비용으로 인식되는 공사원가가 당기 발생원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손금에서 부인되거나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는 세무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진행률의 계산시에 당기에 인식하는 원가를 국제회계기준상의 원가와 일치시키는 방향의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즉, 이러한 비용의 누계는 누적발생원가가 되고 이것은 작업진행률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발생원가의 인식범위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의 진행률과 현행 법인세법에 의한 진행률에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누적발생원가에서 제외되는 항목에서도 현행 법인세법과 국제회계기준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로 인해 누적발생원가에 차이가 나고 궁극적으로는 작업진행률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동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에 의해 인식해야 할 공사수익과 세무상 진행률을 기준으로 당기에 인식해야 하는 익금에 차이가 발생하여 이를 조정하는 세무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진행기준의 적용방법을 개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세액의 변동가능성과 권리의무확정주의의 원칙등에 비추어 판단해야 할 것이다.

수익에 대응하는 원가산정의 차이에 대하여 법인세법에서 국제회계기

준의 계산방식을 수용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즉,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계약원가에 진행률을 곱하여 대응원가를 산정하지만 이렇게 계산된 원가는 이미 발생하여 의무가 확정된 실제 발생비용과는 차이가 있다. 세무상 비용은 의무가 확정되었을 때 인식하는 것으로 이미 발생하여 의무가 확정된 경우라면 이를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이에 따라 공사수익에 대응하는 대응원가의 인식과 관련된 국제회계기준의 규정을 현행 법인세법에서 반영하기는 쉽지 않지만 누적발생원가의 범위와 관련된 부분은 법인세법을 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과 국제회계기준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을 해당 기업이 별도로 구분해서 관리해야 하므로 세무조정이 복잡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법인세법과 국제회계기준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 작업진행률을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작업진행률을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로서 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공사비 누적액 또는 작업시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작업진행률을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 K-GAAP과 K-IFRS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새롭게 변동되는 세무조정은 아니다. 국제회계기준 제1011호에서는 작업진행률의 신뢰성 있는 측정이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로서 회수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발생한 계약원가의 범위 내에서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는데 비하여 현행 법인세법은 인도기준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작업진행률을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도

이전에 회계상 인식하는 수익 및 비용에 대하여 세무상으로 각각 익금불산입 및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계상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발생원가의 범위 내에서 수익을 인식하여 이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세무상으로는 인도 이전에 추가되는 과세소득은 없다. 이에 따라 작업진행률을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록 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가 법인세법의 규정과 상이하더라도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세무조정에 특별하게 어려움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현행 법인세법을 유지하되 회사에 회계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라. 총공사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세무상 수익과 비용은 권리의무확정주의로 인식해야 하기 때문에 총공사손실이 예상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同) 손실은 아직 의무로 확정되지 않은 손금에 해당하여 세무상으로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것은 국제회계기준으로 새롭게 변동되는 세무조정은 아니다. 이미 K-GAAP에서 총공사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당기손익으로 반영하도록 한 것에 비하여 법인세법은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세무조정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회사가 계상한 손실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했다가 나중에 실제로 공사손실이 확정되거나 공사가 완료되면 손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 물론 총공사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K-GAAP에서는 이전에 인식했던 수익까지 환입하도록 하고 국제회계기준은 이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세무조정금액은 이전에 인식했던 수익만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세무상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우발채무 등을 인식하지 않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비추어 예상되는 총공사손실을 인식하지 않는 현행 법인세법의 규정을 유지할 수 있고 회계기준과 일치할 수 있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마. 주거용 부동산의 완성전 판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가 적용되는 건설 등의 범위에는 건설, 제조 및 기타용역, 도급공사, 예약매출이 포함된다.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주거용 부동산의 완성전 판매에 대하여 진행기준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재화의 인도시점에 수익을 계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 법인세법상 주거용 부동산의 완성 전 판매는 진행기준의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주거용 부동산의 완성전 판매는 공사완료 후 인도시점에 인식된 수익과 비용을 법인세법에 따라 공사기간 중으로 배분하는 세무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그 동안 건설계약 관련 법인세법 규정은 기업회계기준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 장·단기를 구분하여 수익을 인식하던 과거 기업회계기준이 건설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진행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정되면서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두어 일치를 시도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건설계약의 적용범위와 관련해서는 주거용 부동산의 완성전 판매와 같이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하여 법인세법상 적용범위를 달리하는 대상에 대한 범위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수익인식 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법인은 해당 계약에 대하여 관리가 필요없는 진행률 계산자료들을 법인세의 계산목적상 관리해야 하며 세무조정 절차가 복잡해지는 측면이 있다. 적어도 이에 대하여 해당 기업이 회계기준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선택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건설공사계약에 대하여 수익과 비용인식 방법의 차이를 요약하면 <표 2-31>과 같다.

〈표 2-31〉 건설계약의 수익·비용의 인식방법 비교

내용	K-GAAP	K-IFRS	법인세법
공사수익인식	총계약금액×진행률	총계약금액×진행률	총계약금액×진행률
공사원가인식	실제발생원가	총예상원가×진행률	실제발생원가
미청구공사와 초과청구공사의 표시	공사미수금은 진행률 에 따라 청구하여야 할 금액임.	공사미수금은 실제청 구한 금액이며 수익인 식금액과 청구금액의 차이는 미청구공사 및 초과청구공사 계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함.	기업회계기준상 미 수금

제5절 회계기준과 세법 간의 비교 및 분석-전자상거래를 대 상으로¹⁰⁵⁾

2000년대 초에 일부 연구에서 분석했던 전자상거래는 아직까지도 수익의 인식 문제에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절에서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회계 및 세무상 처리에 대한 사항을 분석하기로 한다. 인터넷의 발전과 더불어 전자상거래의 규모는 계속적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전세계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되어 가는 구심점이 되고 있다. 전자상거래란 전자적인 방법, 특히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를 지칭하며 전통상거래와 비교할 때 그 이용의 편리성과 경제성 등과 같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거래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기존의 전통적 상거래를 전제로 형성된 회계기준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회계상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전통적 상거래가 실물의 인도와 용역의 제공을 전제로 운영되는 것이라면 전자상거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주문·배송 및 대금지급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실시간에 이루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와 관

105) 본 절은 유영중과 이용환(2004)을 바탕으로 분석한 것이다.

련된 수익인식 문제는 유명중과 이용환(2004)과 같이 상품의 종류에 따른 문제, 운영방식에 따른 문제 및 거래형태에 따른 문제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상품의 종류에 따른 수익인식의 문제

전자상거래에서 거래되는 상품(products)은 그 속성에 따라 물리적 상품(physical goods)과 디지털 상품(digital goods)으로 분류할 수 있다. 물리적 상품이란 전통적인 개념의 재화를 의미하여 디지털 상품이란 디지털화되어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상품을 말한다.

전통적인 시장에서는 물리적 상품이 거래되지만 전자상거래에서는 물리적 상품뿐 아니라 디지털 상품도 거래된다. 물리적 상품의 경우, 계약의 체결과 대금의 결제가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상품의 배송은 전통적인 유통방식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디지털상품의 경우에는 계약의 체결, 대금의 결제, 상품의 배송 등 거래의 전과정이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물리적 상품과 디지털 상품의 개념은 상품의 형태에 따라 분류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개념과는 별개의 개념이다.

서비스 상품은 ① 소유할 수 없고, ② 활용 즉시 소멸되며, ③ 미리 생산하여 재고화할 수 없으며, ④ 형태가 없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기타 상품으로 분류된 무형자산인 특허권, 상표권, 지적재산권 등은 전통적 상거래에서 이미 자산성이 인정되고 있다.

전자상거래에서 회계처리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주로 디지털 상품과 관련되는 것이다. 물리적 상품의 경우에는 이미 상당한 정도의 거래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실현주의(인도기준)에 입각한 매출채권의 인식에 무리가 없다. 그러나, 디지털 상품의 경우에는 유형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 CD형 소프트웨어·백과사전 등과

무형자산으로 분류되는 전송받은 소프트웨어·온라인형 백과사전 또는 게임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 개별적으로 판매되는 경우와 복합적으로 판매되는 경우 등에 따라 매출수익의 인식을 달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판매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하여 주기적인 유·무상의 온라인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관련된 회계처리 문제가 발생하며, 서비스 상품으로 분류된 인터넷 영화감상·온라인 경기관람 등의 경우에도 디지털 상품의 일부로 분류될 수 있어 이에 대한 회계처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2. 운영방식에 따른 수익인식의 문제

전자쇼핑몰의 운영방식은 직영형과 입점형 그리고 링크형으로 구분된다. 이 중 직영형은 제조자가 직접 사이버 스토어(cyber store)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형태이고, 입점형은 입점업체와 쇼핑몰업체 사이에 입점계약을 체결하고 입점업체의 상품을 쇼핑몰업체의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대금결제, 사후관리(after service), 반품 및 환불, 재고 및 배송관리 등의 문제는 입점업체와 쇼핑몰업체가 협의하여 계약에 명시하며 실제로 다양한 형태의 계약이 체결된다. 마지막으로, 링크형은 기업이 직접 쇼핑몰을 운영하여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쇼핑몰업체의 홈페이지에 다양한 공급업체나 상품정보를 수록해 놓고 고객이 원할 경우 공급업체의 홈페이지로 곧바로 찾아갈 수 있는 쇼핑을 위한 포털사이트의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다.

쇼핑몰 운영업체의 매출수익을 인식하는 회계처리방법에는 총액주의와 순액주의의 두 가지가 있다. 총액주의는 고객이 지불한 대금(제품원가, 운송비, 보험료 포함)의 총액을 매출로 계상하고 공급업체에 지불한 금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순액주의는 고객이 지급한 상품이나 용역의 대금에서 공급업체의 공급금액을 차감한 차액(일종

의 수수료)을 수익으로 계상하는 방법이다(최정호와 임창우, 2000). 이 가운데 어느 방법을 채택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총액주의 혹은 순액주의에 대한 판단은 쇼핑몰 운영업체가 판매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냐가 관건이 된다. 직영형 전자쇼핑몰인 경우에는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판매된 제품의 제조원가에 대응되는 매출액은 총액이 매출수익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그러나 입점형 전자쇼핑몰의 경우에는 입점업체와 쇼핑몰업체의 계약조건에 따라 총액주의 또는 순액주의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링크형의 전자상거래에서는 쇼핑몰업체가 단순히 수수료만 받고 제품을 소개하는 정도의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순액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총액주의와 순액주의 중에서 어느 방법을 채택하여도 순이익이나 현금흐름에는 차이가 없으나 총수익과 총비용의 금액이 달라지고 수익과 비용의 인식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기업의 가치가 순이익보다는 매출수익과 같은 외형금액으로 평가된다면 총액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기업의 외형적 가치의 증대를 초래하므로 쇼핑몰 운영업체는 가능한 총액주의를 채택하고자 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3. 거래형태에 따른 수익인식의 문제

전자상거래의 거래형태는 크게 판매거래형태와 접속거래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판매거래형태는 전통적 상거래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거래 형태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이 일련의 협상과정을 거쳐 완료되고 계약이 성립됨에 따라 일시불 또는 할부로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형태이다. 이 경우에는 인도기준에 의하여 수익이 인식되며 전송방식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판매 등의 경우에는 구매자가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받는 순

간을 재화 또는 용역의 인도시점으로 볼 수 있다. 접속거래형태는 유료 온라인게임 등에서 그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거래는 주로 회원제에 의하여 운영되는데 정액요금제와 비례요금제로 구분된다. 정액요금제인 경우에는 구매자와의 계약이 성립되어 구매자가 사용가능한 아이디를 인증해준 시점에서 인도기준에 의한 매출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접속시간에 따른 비례요금제의 경우에는 용역매출로 보아 진행기준에 의한 수익의 인식이 합리적일 것이다.

제4장 요약 및 결론

이상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회계기준과 세법은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해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동안 회계기준과 세법을 모두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규정할 수 있었던 반면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해 회계기준은 더 이상 독자적인 규정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간의 정합성을 위해 회계기준은 원칙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으로만 제정한 후 공개초안(Exposure Draft)을 계속적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법인세법이 회계기준을 기본적으로 준용하는 현재의 체제가 유지될 경우에는 세무조정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점차 커지게 되는 문제점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으로는 이우택(1998 및 2003)의 지적과 같이 기업회계기준의 원칙적인 준용을 규정하는 법인세법 제43조의 포괄위임방식(negative system)을 철폐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11년부터 모든 상장기업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변화에 따라 2010년말의 세법개정에서는 회계기준과 세법의 괴리를 조정하기 위한 다양한 세법개정사항들이 반영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국제회계기준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시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실제 세무실무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문제점이 발생할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불명확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회계 및 각 세법상 수익의 범위, 인식시기 및 인식방법의 조화 및 개선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수익에 대하여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 현재 발표된 공개초안의 내용을 검토한 후 각 회계기준의 내용을 서로 비교·분석했고 과거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분석도 진행하였다. 개별세법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교육세법의 수익인식의 범위와 인식시기 및 측정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수익은 수익과 비용,

익금과 손금의 구분에서 양대 축을 차지하는 항목으로 그 모든 사항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법인세 법과 회계기준의 차이를 중심으로 분석했고, 개별세법에서 차이점이 있는 그 밖의 사항들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세 가지의 수익의 측정과 관련한 핵심적 개념인 시가의 개념에 대하여 분석했고, 업종별 특수성이 강하고 실무상 중요성이 큰 건설계약과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수익과 관련한 광범위한 쟁점들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분석하고자 노력하였다. 참고할 수 있는 선행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진행한 점에서 접근방법상 한계를 지적할 수 있지만 본 연구를 통해 수익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에 대하여 장래의 추가적인 연구주제를 발견하고 세법 개정을 위한 다양한 논의에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김영수, 「미국세법」, 세학사, 2010.
- 김완석, 「법인세법론」, 광교, 2010.
- _____, 「소득세법론」, 광교, 2010.
- 노세진, “전자상거래 환경에서의 회계처리 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회계정보학회 발표논문, 2002.
- 심태섭,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에 따른 세법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9.
- 유영중 · 이용환, “전자상거래의 수익인식문제에 대한 연구, 산업과학연구”, 2004.
- 이만우 · 천형준 · 박기범, “금융 · 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부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세무와 회계저널」, 2006.
- 이우택, “세무회계의 정립과 기업회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소, 1998.
- _____, “세법상 기업회계 준용 규정의 문제점과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 법인세법 제43조의 입법적 오류와 개편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소, 2003.
- 이준구, 「재정학」, 다산출판사, 1995.
- 최상영, “세무회계상의 손금인식기준과 권리의무확정주의”, 「중소기업연구」, 1998.
- 최정호 · 임창우, “전자상거래의 수익과 비용 인식”, 「회계저널」, 2001.
- 한국공인회계사회, “K-IFRS 와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2008.
- 한국세무학회, 「개정세법해설 교재」, 한국세무학회, 2011.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Exposure Draft: Revenue from”,

2. 국외문헌

Contracts with Customers”, 2010.8.17.

PriceWaterhouseCoopers, IFRS and US GAAP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2010.

3. 기 타

www.samili.com

www.pwc.com

■ 研究叢書案内

- ① 資本市場 育成을 위한 租稅政策方向
宣 炳 完 1987. 3
李 愚 澤
- ② 特別消費稅制의 合理的 改善方向
金 完 淳 1987. 3
金 完 石
- ③ 租稅確定의 適正節次 保障에 관한 研究
崔 明 根 1988. 2
金 冕 圭
李 承 文
- ④ 附加價值稅의 政策課題와 改善方向
崔 洸 1988. 3
李 愚 澤
- ⑤ 租稅審判制度의 合理的 改善方案
李 哲 松 1988. 4
金 完 石
- ⑥ 韓國稅制의 合理化에 관한 研究
金 東 建 外 1988. 7
- ⑦ 稅務士制度의 發展方向
申 東 雲 外 1988. 10

⑧ 附加價值稅 納付稅額計算과 課稅特例制度的 改善에 관한 研究

崔 明 根 外 1991. 11

⑨ 土地稅制의 長期的 改編方案에 관한 研究

金 東 建 外 1993. 8

⑩ 相續課稅의 制度改善에 관한 研究

李 鎭 淳 1994. 10

李 哲 松

⑪ 租稅行政의 適正節次와 合理化에 관한 研究

李 愚 澤 1995. 3

⑫ 租稅制裁法制的 再整備

崔 明 根 1995. 3

⑬ 財産課稅行政의 民主的 發展方向에 관한 研究

金 完 石 1995. 3

⑭ 納稅者의 權益保障 提高에 관한 研究

崔 明 根 1996. 2

⑮ 移轉價格稅制와 多國籍企業의 防禦戰略

崔 鏞 善 1996. 3

孫 閏 煥

■ 研究叢書案内

- [16] 所得稅制度 및 行政의 改善에 관한 研究
金 完 石 1996. 9
- [17] 法人稅 課稅體系의 本質的 改編에 관한 研究
李 愚 澤 1996. 10
- [18] 稅務士制度의 課題와 試驗制度의 改善에 관한 研究
崔 明 根 1996. 12
- [19] 個別公示地價의 行政審判制度 改善에 관한 研究
金 完 石 1997. 3
- [20] 稅務士의 租稅訴訟代理適格性에 관한 研究
李 哲 松 1997. 12
- [21] 稅務法人制度의 改善에 관한 研究
金 完 石 1998. 3
- [22] 稅務會計의 定立과 企業會計와의 關係에 관한 研究
李 愚 澤 1998. 3
- [23] 申告納付稅制의 評價와 制度改善에 관한 研究
徐 熙 烈 1998. 3
- [24] 우리나라 企業會計制度의 改善方向
高 承 禧 1999. 3

[25] 企業合併分割의 課稅體系에 관한 研究

李 愚 澤 1999. 3

[26] 聯結納稅制度의 導入方案과 政策課題에 관한 研究

李 愚 澤 2000. 3

[27] 納稅環境의 改善에 관한 研究

金 完 石 2000. 3

[28] 프랑스 租稅節次法 研究

安 昌 湍 2001. 1

[29] 稅效果會計論 研究

高 承 禧 2001. 3

[30] 오스트리아 稅務士制度에 관한 研究

金 完 石 2001. 3

李 鍾 永

[31] 리스會計와 리스稅務에 관한 研究

李 愚 澤 2001. 3

[32] 派生商品關聯去來의 課稅에 관한 研究

玉 武 錫 2001. 4

[33] 推計課稅方法에 관한 研究

金 完 石 2001. 4

■ 研究叢書案内

[34] 附加價值稅 改編方案 研究

安 昌 湍 2002. 3

[35] 營業權(企業價值)의 會計와 稅務에 관한 研究

李 愚 澤 2002. 3

[36] 負擔金 관련 行政審判代理業務의 擔當主體에 관한 研究

金 相 憲 2002. 3

[37] 企業年金의 會計와 稅務

高 承 禧 2002. 3

[38] 不動産 관련 地方稅制의 改善에 관한 研究

金 完 石 2003. 3

[39] 綠色申告 納稅制度 導入에 관한 研究

稅務士制度改善推進委員會 2003. 3

綠色申告制度研究委員會

[40] 電子商去來時代に 對應한 課稅體系整備와 稅務서비스 改善

李 在 奎 2003. 3

皇甫 烈

[41] 稅務서비스 市場開放에 대한 稅務代理業界의 對應

高 俊 誠 2003. 3

[42] 稅法상 企業會計 準用 規定의 問題点과 改編方案에 관한 研究

(法人稅法 第43條의 立法的 誤謬와 改編方案을 中心으로)

李 愚 澤 2003. 11

43 納稅組合의 效率的 管理改善 方案

金 雄 熙 2005. 3

李 基 煜

44 租稅法令 解釋情報의 體系的 生産 및 傳達 方案

李 基 煜 2005. 7

金 雄 熙

45 新經濟時代 우리나라 株式評價 및 課稅體系的 改編方案

李 愚 澤 2008. 7

金 完 鎰

46 EITC(勤勞獎勵稅制)導入의 先決課題에 관한 研究

俞 景 文 2008. 7

47 租稅法の 憲法合致的 立法論에 관한 研究

李 銓 午 2008. 8

48 賣買事例價額의 時價適用 및 이에 따른 課稅體系的 改編方案

朴 孔 卓 2008. 8

49 우리나라 記帳擴大方案 研究

朴 性 培 2008. 8

50 租稅行政審判前置制度에 관한 研究

蔡 羽 爽 2008. 8

51 미술시장의 활성화 및 세제지원방안 연구

安 昌 湍 2009. 1

■ 研究叢書案内

- [52] 조세측면에서의 기업지배구조와 세무사의 역할 증대
가능성에 관한 연구
徐 熙 烈 2009. 1
- [53]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 과세체계에 관한 연구
金 淀 植 2009. 1
朴 薰
- [54] 수증재산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의 경합과 그 조정에 관한 연구
金 完 石 2009. 3
- [55] 현대 조세환경에 위배되는 세무대리·세무대리인·
납세협력비 등 언어의 폐해와 개선방안
李 愚 澤 2009. 10
- [56] 국제회계기준(IFRS)도입이 세무사의 업무영역에 미치는 영향
심 태 섭 2010. 3
김 상 철
서 희 열
- [57]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 윤 성 2010. 4
이 은 자
이 명 근
- [58] 재개발·재건축사업 관련 조세제도에 대한 연구
정 지 선 2010. 4
장 근 호

59 우리나라 가산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 정 식 2010. 4

서 희 열

60 대표자인정상여 소득처분제도의 위헌성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윤 석 남 2011. 3

심 충 진

61 각 세법상 부당행위계산규정의 상충관계 해소를 위한 연구

정 지 선 2011. 3

권 오 현

62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제도의 주요 차용개념과 그 범위에 관한 연구

오 기 수 2011. 3

손 장 엽

63 회계 및 각 세법상 수입(수익)의 범위, 인식시기 및 인식방법의
조화·개선에 관한 연구

전 병 욱 2011. 3

최 보 람

■ 研究調査資料案内

① 西獨의 稅務士法에 관한 研究

李 承 文

1987. 2

② 主要國의 法人所得課稅制度

吳 赫 柱

1987. 3

李 愚 澤

李 哲 松

權 海 浩

③ 主要國의 個人所得課稅制度

吳 赫 柱

1988. 3

崔 炳 哲

李 哲 松

權 海 浩

④ 主要國의 相續課稅制度

崔 炳 哲

1989. 3

李 哲 松

權 海 浩

吳 赫 柱

⑤ 主要國의 消費課稅制度

金 文 守

1993. 4

崔 炳 哲

李 哲 松

權 海 浩

〔6〕 獨逸의 稅務代理制度에 관한 研究

金 完 石 1994. 10
李 鍾 永

〔7〕 獨逸의 租稅基本法과 財政法院法

李 愚 澤 1995. 3
張 台 柱

〔8〕 日本의 稅理士制度에 관한 研究

權 海 浩 1995. 6

〔9〕 獨逸會社法

李 炯 珪 1996. 1

〔10〕 獨逸稅務士法

崔 竣 璿 1996. 3
李 承 文

〔11〕 美國의 法人所得課稅制度

朴 胤 浚 1997. 2

〔12〕 獨逸企業의 年次決算會計와 會計監査制度에 관한 研究

金 光 洙 1998. 3

〔13〕 獨逸法人稅法

金 光 洙 1999. 2

〔14〕 獨逸・日本・美國의 稅務士關係法令集

金 裕 燦 外 2003. 3

研 究 報 告 書
第 63輯 (2011. 3)

회계 및 각 세법상 수입(수익)의 범위, 인식시기 및
인식방법의 조화·개선에 관한 연구

2011年 3月 15日 印刷

2011年 3月 18日 發行

著 者 **전병욱 · 최보람**

發行人 **韓國租稅研究所**

發行處 **韓國稅務士會**

137-870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497-16

電話(代) 587-6021

登錄：1988年 11月 11日(바 1184)

ISBN 979-11-5520-005-6

〈非賣品〉